

2011년 고전국역 및 국어문제 학술발표회

동양고전 譯註의 제문제 및 국어개념 定立과 국어기본법

일시 : 2011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전통문화연구회 /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 (사)한국어문화 / 반디앤루니스 구경서숙

◆ 모 시 는 글 ◆

본회에서는 1988년부터 한국학과 고전번역의 先決課題인 東洋古典籍 現代化 사업을 추진하여 10여년 전 四書三經을 완역하고, 이어서 정부의 지원으로 《莊子》, 《春秋左氏傳》, 《唐詩三百首》, 《通鑑節要》 등을 완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동양고전 번역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편 장래 우리 문화 발전의 기본인 어문정책 연구로 ‘국어개념의 정립과 국어 기본법 문제’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를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알차고 풍성한 발표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公私多忙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일

전 통 문 화 연 구 회 회 장 李啓晃
이 사 장 宋載邵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鄭愚相 外
郭定茲

◆ 행사일정 및 목차 ◆

14:00 ~ 14:15	개회사	李啓晁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14:15 ~ 14:30	축사	李漢東 (전 국무총리)
		李東歡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14:20 ~ 16:00 1부 - 동양고전 번역의 제문제

사회 : 田好根 (경희대 교수)

- 《莊子》 翻譯의 몇 가지 문제점 5
安炳周 (성균관대 명예교수)
- 翻譯制度에 대한 所懷와 拙譯의 誤謬에 대하여 11
鄭太鉉 (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 『譯註 唐詩三百首』를 마치며 15
宋載邵 (성균관대 명예교수)
- 《通鑑節要》를 完譯하고 19
成百曉 (해동경사연구소 소장)

16:00 ~ 17:00 2부 - 국어개념의 정립과 국어기본법 문제

사회 : 裴源龍 (서경대 강사)

- 國語學的 見地에서 본 國語 基本法 29
金慶洙 (중앙대 명예교수)
- 우리나라 국어 어문정책에 대한 헌법학적 조명 41
崔大權 (서울대 명예교수)
- 憲法 제9조에 비추어 본 國語基本法의 문제점 55
李仁皓 (중앙대 교수)

17:00 폐회

《莊子》 翻譯의 몇 가지 문제점

安炳周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강의나 글쓰기 때문에 다수의 동양고전을 읽거나 강의했지만 그중 가장 자주 읽었던 고전은 《孟子》였다. 그런데 정년하고 나서 가장 자주 읽었던 책은 《莊子》였다. 아무래도 정년을 하고 나서 세상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 처지에서는 《맹자》 같은 治世의 論보다는 신기한 이야기 거리로 가득한 《장자》 같은 책이 유용한 福音書인 듯 싶다. 《장자》를 읽고 있노라면 때로 북쪽 검푸른 바다에서 鯤鵬과 함께 노닐다가 어느새 남쪽 바다의 커다란 거북을 타고 수만 리 수천 년의 視空間을 넘나든다.

그러다 전통문화연구회의 의뢰로 《장자》번역을 맡게 되면서 그렇게 재미나던 책이 갑자기 한없이 어려운 책이 되고 말았다. 옳고 그름을 굳이 따질 것 없이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으면서 즐겁게 思索하다가 한 가지 뜻으로 確定하여 번역해야 할 처지가 되니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如針筭身)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학재직 중 《장자》를 여러 해 동안 講讀하면서 기록해 두었던 20여권의 노트를 정리하기만 하면 쉽사리 번역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번역에 착수하자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難解處가 되어 대부분의 번역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古典翻譯을 스포츠에 견주자면 아마 마라톤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논문을 쓸 때처럼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의 목적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쓸 수도 없고, 때로 텍스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翻譯者는 어쨌든 最善의 판단을 통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翻譯語를 提示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요령이나 재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절대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마라톤과 무엇이 다르랴.

성립시기가 오래된 고전이 다 그렇지만 《장자》는 특히 이설이 분분하다. 심지어 《장자》라는 책이 莊子 自身の 著述인지에 대해서도 懷疑的인 학자들이 많을 뿐더러 그의 身上조차 정확하지 않아서 정설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 장자 자신의 저술이라고 합의된 〈內篇〉을 제외한 나머지 〈外篇〉과 〈雜篇〉은 각편마다 저자와 성립시기마저 달라서 전편을 통털어 일관성 있는 번역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한두 해 정도면 끝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번역이 무려 8년 가까이 걸려 비로소 네 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때 한 번역이 최선인지 자신할 수 없다.

하여 번역할 때 고민했던 문제들 중에서 주석가들의 이설이 분분하여 이야기 거리가 될 만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정리해 보았다.

1. 文明과 野蠻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逍遙遊〉 제3장에는 宋나라 사람이 장보관을 장사 밑천으로 장만해서 越나라에 갔다가 월나라 사람들이 단발에다 문신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斷髮文身 無所用之)는 고사가 나온다.¹⁾ 이 이야기는 흔히 송나라 사람의 어리석은 행위를 풍자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경우 ‘斷髮文身 無所用之’를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文身을 하고 있어서 갓을 쓸 필요가 없었다.”로 번역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주석가들 중에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의 유학자였던 朴世堂이다. 박세당은 ≪南華經註解刪補≫에서 “갓<을 쓰는 문화적인 행동>은 천하의 美風인데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문신을 한 越人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章甫天下之美 而斷髮文身者無所用之].”은 마치 “至德은 천하의 盛德인데 知的 귀머거리와 知的 장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至德天下之盛 而聾瞽乎知者所不能識].”과 같다고 비유하여, 不知者에 대한 풍자를 위해 설정된 이 說話에서 不知者를 越나라 사람으로 보고 있다. 풍습이 다른 越나라에 갓을 잔뜩 장만하여 팔러 간 宋人을 풍자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해석과 다르다. 게다가 朴世堂처럼 해석하여야 ‘越人斷髮文身’의 이 節이 이 第3章의 말미에 붙어 있는 까닭이 분명해진다.

아무튼 通說을 따르면 송나라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박세당의 견해를 따르면 오히려 월나라 사람이 야만인이 된다. 그렇다면 장자의 뜻은 이 둘 중 어디일까? ≪역주 장자≫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중립을 취하여 “월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文身을 하고 있어서 갓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로 번역하였다. 장자는 이렇게 곧잘 우리의 고개를 가웃거리게 한다.

2. 참다운 主宰者는 있는가 없는가?

〈齊物論〉은 先秦시기의 수많은 문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칭송되지만 그만큼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南郭子綦가 顔成子游에게 地籟를 이야기해주는 부분은 송나라의 왕안중이 책을 열면 바람소리가 난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후 술한 아류작이 이어 나왔을 만큼 명문 중의 명문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여기서 장자는 갓가지 모양으로 생긴 구멍과 거기서 나는 다채로운 바람 소리를 늘어놓고서는 마지막으로 ‘怒者 其誰邪’ 하고 질문을 던지고는

1) 宋人이 資章甫而適諸越한대 越人이 斷髮文身이라 無所用之니라

시치미를 뚝다.²⁾

‘怒者 其誰邪’를 단순히 번역하면 “소리 나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뜻이다. ‘怒者’는 힘찬 바람 소리가 나게 하는 것으로 ‘使衆竅爲怒而鳴者 爲誰邪?’ 정도로 풀이할 수 있고 邪(야)는 대체로 의문형 助辭로 쓰인다. 그렇다면 “구멍으로 하여금 힘찬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그 누구인가.”로 번역하면 무난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번역하고 나서이다. 이 대목을 앞 구절과 연결하여 ‘咸其自取 怒者其誰邪’를 ‘怒者其誰邪 咸其者取’의 倒置形文章으로 보아 “소리 나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모두 스스로 취하는 것이지 소리 나게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邪자를 단순히 의문형 助辭로 보지 않고 反語를 나타내는 助辭로 보면 ‘怒者其誰邪’를 “누가 소리를 내게 하겠는가? 다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게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陸德明이 최고의 《장자》 주석가라고 평했던 郭象이 바로 이런 견해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는 수많은 구멍에서 각기 다른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자기 원인에 의해 그런 것이지 그 구멍들로 하여금 소리를 내게 하는 배후의 主宰者가 따로 없다고 말한다. 그는 “物은 그것이 生하여 나오도록 하는 원인이 따로 없이 自生한다. 이것이 天道이다[物各自生而無所出焉 此天道也].”라고 하고 또 “物은 각각 自得할 따름이니 누가 그것을 그렇게 소리를 내게 主宰하겠는가.[物皆自得之耳 誰主怒之使然哉].”라고 하였다. 주재가 따로 없이 모두가 자기 원인에 의해 自生自化하는 것으로 보는 이 郭象 流의 주석을 따르면 下文에 보이는 ‘眞宰’나 ‘眞君’도 流轉變化하는 現象界의 밖에 따로 實在하는 주재자로 보지 않고 天 즉 自然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현대의 주석 가운데도 “소리를 내게 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한 자는 있지 않다)”고 하여 曠상의 해석을 따르는 金谷治 같은 이가 있다. 福永光司도 曠상에 근거하여 莊子의 道는 현상세계의 배후에 있는 주재자가 아니라 變化의 흐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莊子를 中國哲學史에서 氣哲學의 源流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와 반대로 ‘怒者其誰邪’를 反語文이 아닌 단순한 의문문으로 보고 下文에 보이는 ‘其所爲使’ ‘眞君’ ‘眞宰’ 같은 것이 있음을 暗示하는 문장으로 이해하는 주석도 만만치 않게 많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읽은 林希逸 《莊子口義》의 현토본이나 朴世堂의 주석이 여기에 속하고 赤塚忠, 森三樹三郎, 池田知久도 같은 해석을 취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郭象의 해석을 莊子에 대한 叛逆으로까지 極言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朴世堂은 “使其自己 咸其自取는 구멍이 있으면 곧 거기서 나는 소리가 있어 모든 物이 그 자체로는 스스로 취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 바람이 없다면 비록 구멍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람 소리가 날 수 없으니 이것은 본시 그렇도록 시키는 것이 있기 때

2) 子綦曰 夫吹萬不同하나 而使其自己也어늘 咸其自取하나니 怒者는 其誰邪야

문이다. 怒者其誰邪는 구멍이 소리나게 하는 것은 바람이고 바람은 곧 하늘의 所爲임을 말한 大使其自己 咸其自取 言有是形卽有是聲 物莫不於己而自取之 然非天之有風 則雖有其形 而無所取其聲 是固有使之者也 怒者其誰耶 言竅怒者風 而風卽天之所爲也.”라고 하여 天을 주재자로 보고 있다. 이 견해를 반드시 따르지 않더라도 참고할 만한 주석이다.

3. 노자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養生主〉의 마지막 장에는 老聃의 친구였던 秦失(진일)이 노자의 장례식에 갔다가 세 번 호곡하고 나오는 조문 장면이 그려져 있다.³⁾ 노담의 문인들이 “당신은 우리 선생님 노자의 친구 분이신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문해도 되느냐?”고 묻자 진일은 ‘吾以爲其人也 而今非也’라고 대답한다. 〈譯註 莊子〉에서는 “처음에 나는 〈노담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아니다.”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其人’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林希逸, 福永光司, 池田知久, 安東林 등은 그럴 만한 큰 인물, 곧 훌륭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역주 장자〉의 번역은 이들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들의 견해는 “文如海本에 ‘其人’이 ‘至人’으로 되어 있다.”는 郭慶藩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서지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또 曠상의 경우는 其人이 노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곡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金谷治는 앞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면서 老聃의 인물을 貶下해서 哭泣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生死 자체를 초월한 秦失의 입장과 맞지 않고, 또 〈太平御覽〉의 引用에서는 ‘今非也’가 ‘今非人也’로 되어 있으므로 “처음에는 사람으로 교제하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아니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두 가지 다른 견해는 安東林의 정리처럼 이 章에서 老聃을 훌륭한 인물로 결론짓느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귀결된다. ‘其人’을 老聃으로 볼 경우, “노담이 ‘훌륭한 인물’인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 아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曠상처럼 其人을 ‘모여든 衆人’으로 볼 경우, 衆人들이 노담을 흠모하여 모여들어 곡하였지만 그 슬퍼함은 숙된 인정에 의한 것일 뿐, 노담은 결코 죽음 따위를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에 따라 生死를 초월한 심경에 있었다고 하여 노담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 方勇·陸永品은 이 구절을 노담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면 장자가 〈天下〉에서 老聃을 博大真人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金谷治와 같이 “처음에는 노자를 세속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니 아니다.”는 식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장자의 경우 공자를 평가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높이이고 어떤 경우에는 낮추기도 했고, 성립시기가 훨씬 뒤로 추정되는 外篇 〈천하〉의 내용으로 내편

3) 老聃이 死어늘 秦失이 弔之호대 三號而出한대 弟子曰 非夫子之友邪아 曰然하다 然則弔焉호대 若此可乎아 曰 然하다 始也에 吾以爲其人也러니 而今에 非也로다

인 〈양생주〉의 뜻을 풀이하는 것도 무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 구절이 노담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역주 장자》에서는 林希逸, 福永光司, 池田知久, 安東林 등의 견해를 따라 번역하였지만, 金谷治의 견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장자의 주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쉽사리 버릴 수 없는 견해라 하겠다.

4. 날개 없이 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人間世〉 제1장에 나오는 공자와 안희의 대화에서 공자는 心齋를 이룬 안희에게 어떻게 하면 세속에서 살면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⁴⁾ 그 중 ‘聞以有翼飛者矣 未聞以無翼飛者也’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대로 번역하면 “날개를 가지고 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날개 없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정도가 된다. 통상 ‘聞……未聞……’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聞에 해당하는 내용을 옳다고 인정하고 未聞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정하는 표현이다. 郭象의 경우는 이 말의 뜻을 “반드시 道具가 있어야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이제 至虛의 집[道]이 없으면 化物의 實을 거둘 방법이 없다 言必有其具 乃能其事 今無至虛之宅 無由有化物之實也.”고 주해하였고 池田知久가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未聞에 해당하는 내용을 긍정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곧 날개 없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道の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林希逸은 이 구절을 두고 “새는 반드시 날개를 가지고 날지만 날개 없이 날 수 있어야 바로 빨리 가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빠르고 걸어가지 않아도 저절로 도달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神의 경지이다 鳥之飛 必以翼也 無翼而飛 便是不疾而速 不行而至 此所謂神也.”라고 풀이하여 날개 없이 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뜻으로 보았다. 安東林, 李基東, 赤塚忠, 福永光司, 金谷治 등도 모두 林希逸과 같은 견해이다. 安炳周는 처음에는 郭注나 池田知久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글에는 특별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할 것 없이 단순한 必須道具說 정도의 뜻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였으나, 번역에 함께 참여했던 田好根이 “郭象의 주석은 앞의 ‘絕迹易 無行地難’이나 뒤의 ‘虛室生白 吉祥止止’ 등의 뜻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 것이 可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그 견해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自然에 맡겨 나는 것이 ‘無翼而飛’라고 풀이하고 “날개를 가지고 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자연에 맡겨〉 날개 없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로 ‘〈자연에 맡겨〉’라는 보충역을 넣어 번역하였다.

4) 絶迹은 易커니와 無行地는 難하니라 爲人使면 易以僞어니와 爲天使면 難以僞니라 聞以有翼으로 飛者矣오 未聞以無翼으로 飛者也케라 聞以有知로 知者矣오 未聞以無知로 知者也케라 瞻彼 闕者하라 虛室에 生白하나니 吉祥이 止止로다 夫且不止할새 是之謂坐馳니라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장자》는 텍스트 자체에 異說이 워낙 많기 때문에 翻譯에 어려움이 많은 文獻이다. 게다가 그 이설들이란 게 그냥저냥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見解가 모두 《장자》를 읽고 깊이 사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냥 버릴 수 없다. 《장자》는 읽으면 읽을수록 물음표가 많아지는 책이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異說을 比較하면서 읽는 것도 《장자》를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翻譯制度에 대한 所懷와 拙譯의 誤謬에 대하여

鄭太鉉 (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지난봄에 中國 上海에 위치한 上海古籍出版社를 尋訪하여 主編 趙昌平先生으로부터 上海古籍에서 운용하고 있는 번역제도에 대해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상해고적에서는 번역할 대상 書目이 정해지면 먼저 그 底本에 標點作業과 동시에 註釋作業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辭典을 만들고 나서 翻譯作業에 들어가고, 번역이 끝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校閱과 潤色을 거친 뒤에 出版에 부친다. 그러므로 분량이 많지 않은 간단한 한 책 짜리 譯書라 해도 출판하기까지 몇 해가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또 各界의 專門家로 구성된 諮問機構를 두어 專門知識을 요하는 부분을 해결한다고 한다. 標點作業을 하면 全篇을 通讀할 수 있어서 作者의 構文形式과 下字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註釋作業을 하면 難解한 辭句와 특이하게 쓰인 글자 등을 정확히 이해해 疑晦를 없앨 수 있고, 전문가의 교열과 윤색을 거치면 誤謬를 濾過할 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제도라 하겠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翻譯機關이 번역을 委囑할 때에 미리 期間을 정해 주고서 수시로 原稿를 督促을 하는데, 그 기간이란 것이 길어야 1년이고, 짧으면 고작 몇 개월에 지나지 않으니, 어느 겨를에 全篇을 通讀하여 문장의 흐름이나 작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各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두지 않고서, 一般常識이나 文理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까지 譯者에게 일임하고 있으니 良質의 번역을 기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古典에는 天文·地理·禮制·樂律·醫藥·卜筮·稅制·軍制 등 專門知識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수 나온다. 古典은 古人이 淹貫經史하고 博涉群書하여 定立한 思想과 축적한 지식을 文字를 빌려 표현한 것이니, 이를 번역하려면 역자의 수준이 거의 작자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바르게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몇몇 大家를 제외하고는 나를 爲始하여 各 翻譯機關에서 번역에 종사하는 역자들의 수준이 中國古典이나 우리나라 文集 등을 讀解할 수 있는 정도의 文理만을 갖추었을 뿐, 古人들처럼 淹貫博涉하여 該博한 지식을 갖춘 역자는 드무니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을 만나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상해고적처럼 번역을 위촉할 때 미리 기간을 정하지 말고 全篇을 通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各계의 專門家로 諮問機構를 구성하여 역자의 자문에 이바지하게 하고, 卷秩이 많은 經典이나 全書類의 겨우 初卷부터 終卷까지의 번역이 완료한 뒤에 전문가의 校

閱과 潤色을 거쳐 出版에 부친다면 誤謬의 濾過와 譯文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 비교적 可讀性이 높은 良質의 譯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각계의 전문가로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일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해당 專門家가 없을 경우, 中國이나 日本에서 전문가를 널리 찾아서 顧問으로 委囑해 역자들의 자문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左傳》에 대하여

司馬遷은 《史記》〈十二年表序說〉에서 “魯君子左丘明懼弟子人人異論 失其眞 故因孔子史記(即春秋)具論其語 成左氏春秋(魯나라 君子 左丘明이 공자의 제자들이 사람마다 論說을 달리하여 공자의 본의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므로 공자의 史記(春秋)에 의거하여 經에 말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論述하여 《左氏春秋》를 編纂하였다.)”라고 하여, 《左傳》을 左丘明이 經의 뜻을 정확히 傳하기 위해 지은 釋經書로 보았다. 그러나 朱彝尊의 《經義考》에 의하면 《春秋》와 《左傳》은 본래는 각기 다른 別個의 책이었는데, 뒤에 杜預가 《左傳》에 注를 내면서 傳을 年度別로 나누어 經의 年度 밑에 붙이면서부터 別個의 두 책이 합쳐져 한 책이 되었다고 하였다. 葉夢得은 그의 著書 《春秋考》에서 《春秋》는 哀公 14년에서 끝났는데, 《左傳》은 27년에 끝났으니, 孔子가卒한 13년 뒤이다. 그리고 孔子 死後 47년에 죽은 楚惠王과 사후 48년에 죽은 魯悼公과 사후 53년에 죽은 趙襄子가 言及된 점으로 보아 左氏는 孔子와 同時代人이 아니다. 지금 《左傳》을 살펴보면 秦孝公 이후의 일이 매우 많이 보이니 左氏는 戰國 때 사람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左氏를 丘明이라 한 것은 司馬遷의 失檢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左氏傳》이 《春秋》의 解釋書인지 아니면 別本の 《左氏春秋》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없지 않으나, 魯隱公 元年(기원전 722)부터 魯哀公 27(기원전 468)년까지 모두 254년 동안, 각 諸侯國의 興亡盛衰와 당시의 政治, 軍事, 經濟, 外交, 制度, 文物, 風俗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史料임에는 틀림없다. 東漢 때에 비로소 太學의 正規科目으로 採擇되면서 5經의 班列에 올라 學者들의 必讀書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三國史記》에 元聖王 4년에 讀書三品科를 設置하고서 《左傳》을 上品科로 規定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아마도 元聖王 이전에 들어왔을 것으로 推定된다. 高麗 成宗 때 國子監을 설치하고서 九經을 교육하였고, 崔沖의 九齋學堂에서도 九經이 基本教科였으니, 이때에 《春秋傳》이 학자들의 必讀書였음을 알 수 있다. 朝鮮朝에 와서도 權近의 《春秋淺見錄》을 비롯하여 많은 學者들의 文集에 《春秋傳》에 관한 論·說·講·辨·筭記 등이 실려 있으니, 당시에 《春秋》에 대한 關心度가 어떠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板本에 대하여

板本은 朝鮮朝 世宗 22년(1440) 5월에 集賢殿에 明하여 杜預의 《集解》를 主로 삼고, 林堯叟와 朱申의 《左傳句解》에서 중요한 部分만을 뽑아 附註해 編纂한 《春秋經傳集解》를 底本으로 하였다.

誤謬에 대하여

나는 十餘年 전에 傳統文化研究會에서 《春秋左傳》을 연구하여 번역할 것을 권유 받아 봤는데 후에 부득이 《春秋左傳》을 번역하기로 作心하였다. 막상 번역에 착수하고 보니 스스로의 力量이 미치지 못함을 헤아리지 않고서 경솔히 作心한 것이 크게 後悔되었다. 허나 이미 시작한 일이라 어찌할 수 없어 많은 誤謬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蠻勇을 부려 번역을 마치기로 하였다.

작업을 시작할 때에 開卷劈頭부터 苦心한 것은 『春王正月』이었다. 杜預의 注에는 ‘正月’만을 ‘周王之正月’이라고 註釋하고, ‘春’은 夏時인지 周時인지를 말하지 않았다. 漢 孔安國 · 鄭玄 등은 時와 月을 모두 周時와 周月이라 하였고, 程伊川은 春은 夏時이고 月은 周月이라 하였고, 蔡沈은 時와 月을 모두 夏時와 夏月이라 하였다.⁵⁾ 桓公 八年 經의 “冬十月雨雪”과 僖公 三十三年 經의 “冬十有二月 隕霜不殺草”와 定公 元年 經의 “冬十月 隕霜殺菽” 등으로 보면 時와 月이 모두 周正인 것 같은데, 傳에는 時와 月을 夏正으로 기록한 곳(隱公 三年 夏四月取濫之麥 秋又取成周之禾 等)도 있고 周正으로 기록한 곳(僖公 五年正月 日南至와 昭公 二十年正月 日南至 等)도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朱子 같은 大儒도 “起頭一句春王正月 便不可解 固有當闕之疑”라 하였는데, 하물며 末學後生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 可否를 云謂할 수 있겠는가?

역자는 원래 術書에 門外漢이어서 번역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襄公 9년傳에 나오는 天道(天體의 運行으로 나타나는 天象)로 인한 宋災와 閔公 · 莊公 · 僖公 · 襄公 · 昭公 傳에 나오는 卜筮였다. 시작할 때는 高雅한 우리말을 찾아 유창하게 번역하고 싶었지만 막상 번역을 마치고서 대충 훑어보니 말이 難澁할뿐 아니라 誤謬가 군데군데 보였다.

發凡起例의 뜻으로 쓰인 ‘凡’字는 ‘무릇’이나 ‘대체로’로 번역해야하는데도 闕譯하거나, ‘凡例에 의하면’으로 번역하는 誤謬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10여 곳에 나오는 ‘大夫之靈’ · ‘君之靈’ 등의 ‘靈’字에는 福 · 善 · 神靈 · 威靈 · 精氣

5) 《書經 伊訓》의 ‘惟元祀十有二月乙丑’ 蔡註에 ‘三代之 正朔이 같지 않았으나 모두 寅月로 起數하였으니, 朝覲 · 會同 등의 일은 正朔에 거행하고 月의 數를 기록함에는 모두 寅月을 歲首로 삼은 것이다.’는 말이 보인다.

등의訓만 있고 ‘德澤’이란訓은 없으나, 隱公 3년 傳에 보이는 “若以大夫之靈 得保首領以沒”의 靈은 ‘도움’이나 ‘德澤’으로 번역해야 우리말에 맞을 것 같아訓을 무시하고서 僭越하게 ‘德澤’으로 번역하였다. 이곳에 ‘靈’을 ‘덕택’으로 번역하였으면 나머지 곳의 ‘靈’도 ‘덕택’ 또는 ‘도움’으로 번역하여야 譯文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데도 ‘威靈’ ‘福’ 등으로 번역하여 전후의 역문에 표현이 같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重出한 辭句는 前出句와 後出句의 譯文의 같아야 하는데도 僖公 28年·成公 13年·襄公 25年·定公 4年·哀公 16年 傳에 보이는 ‘天誘其衷’을 어떤 곳은 林堯叟의 注說을 취해 “하늘이 사람들에게 中正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였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天誘其衷은 當時의 慣用語로 하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다.”고 한 楊伯峻의 注說을 취해 ‘天佑’의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으며, 또 莊公 11년 襄公 17년 昭公 25년 哀公 16년 傳에 보이는 拜命之辱도 어떤 곳은 “拜辱厚命(내리신 厚意에 감사를 포함.)”이라고 한 杜注를 취해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當時慣語 猶如後代 ‘承蒙關注 實不敢當’(관심을 보여주시니 실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한 楊伯峻의 注說을 취해 번역하기도 하여 전후의 역문에 표현이 다른 잘못을 범하였으며,

杜注에 보이는 桓公 10年の ‘終施父言’, 僖公 22年の ‘傳終史蘇之占’과 ‘傳終仲孫湫之言也’ 등의 ‘終’은 모두 앞에 있었던 일이나 말을 終結하였다는 뜻이니, ‘施父의 말을 종결한 것이다.’ ‘傳文은 史蘇의 占을 종결한 것이다.’ ‘傳文은 仲孫湫의 말을 종결한 것이다.’로 번역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끝내 들어맞았다.’로 誤譯하였을 뿐만 아니라 ‘傳終史蘇之占’과 ‘傳終仲孫湫之言也’에는 譯註까지 붙여 附會하는 妄發하기까지 범하였다.

底本에 실린 林注에는 四庫全書 《杜林合注》本에 실리지 않은 註釋이 상당수 있어서, 그중에 誤字인 듯한 글자를 考據할 길이 없어서 未詳으로 처리하였으며, 특히 杜注와 林注에 難解한 곳은 強解한 곳이 적지 않다. 뜻이 함축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傳文과 너무 간략한 杜注는 孔穎達의 疏를 취하여 補充說明하였다.

우리나라 先學들의 註說도 다수 취하여 譯註에 紹介하고 싶었지만 우리나라 先學들의 註說은 春秋大義를 闡明한 것이 대부분이고, 傳文의 解釋에 도움이 되는 註說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많이 취하지 못하였다.

대충 살펴봐도 誤謬가 이러하니 자세히 檢討하면 틀림없이 오류가 많을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진다. 변명 같지만 全秩의 번역을 마치고서 다시 시간을 갖고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出版하였다면 오류가 상당수 걸러졌을 것이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譯註 唐詩三百首』를 마치며

宋載邵 (성균관대 명예교수)

1

그 전부터 느끼고 있던 바이지만, 『唐詩三百首』를 번역하면서 절감한 사실은 漢詩의 번역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시의 ‘번역’이 어렵다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한시 자체의 이해가 우선 어렵다. 이것은 한시뿐만 아니라 모든 詩에 다 해당되는 말이다. 論理的 단계를 밟아 이론을 전개하는 散文과는 달리, 詩는, 작자의 情緒를 이미지를 통하여 그냥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淸나라의 文人 吳喬는 ‘詩와 散文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둘의 뜻[意]이야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다만 體制와 辭語가 같지 않을 따름이다. 뜻을 쌀에 비유한다면 散文은 그것으로 밥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詩는 그것으로 술을 빚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밥은 쌀의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술은 쌀의 형태와 성질이 완전히 변한다.

참으로 절묘한 비유이다. 작자의 사상이나 생활의 諸局面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산문에 비해, 생활에서 촉발된 喜怒哀樂의 정서가 化學的 反應을 거쳐 變容되어 표현된 것이 詩이다. 그렇기 때문에 詩가 어려운 것이다.

무릇 이렇게 모든 詩의 이해가 어려운 관인데 漢詩의 경우는 더더욱 어렵다. 이것은 漢字가 지닌 表意的 象徵性和 含蓄的 簡潔性에 基因한 바가 크다. 그렇게 때문에 律詩나 絕句와 같은 짧은 시를 해독하려면 때로는 작자 이상의 想像力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게다가 漢詩를 온전히 해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故事를 알아야 하고 작가의 생애와 그 詩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唐詩의 경우에는, 수준 높은 문학적 기교와 예술성이 녹아있기 때문에 詩의 내용과 예술성이 함께 어우러진 詩作品을 옹가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2

중국문학을 역사적으로 概觀할 때 흔히 漢文, 唐詩, 宋詞, 元曲, 明清小說을 거론한다. 그만큼 唐나라는 시문학을 활짝 꽃피웠던 시대였다. 淸나라 康熙年間に 편찬된 『全唐詩』에는 2,300여 작가의 詩 50,000여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나라 이전까지 제작된 중국시의

총량을 훨씬 초과하는 편수이다. 과연 당나라 300여 년은 詩의 황금시대라 할만하다. 唐나라에 이르러서 詩는 사상 내용이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형식과 기교면에서도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다.

이후 唐詩는 모든 詩歌文學의 典範이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鮮初까지는 고려시대의 餘風을 답습하여 宋詩를 모범으로 삼다가, 李達, 崔慶昌, 白光勳 등 이른바 ‘三唐詩人’의 출현을 계기로 해서 唐詩가 크게 유행했다. 이로부터 조선의 시단에서 唐詩는 확고부동한 지위를 점했다. 모든 시인들이 唐詩를 배우려 했고 또 모든 詩의 優劣이 唐詩를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唐詩는 詩자체가 지닌 높은 예술적 가치로 인해서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읽혀져서 수많은 唐詩選集이 나왔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것이 『당시삼백수』이다. 이 책은 清代의 孫洙가 편찬한 것인데 乾隆 29년(1764)에 처음 출간되었다. 이후 1835년에 章燮이 『唐詩三百首註疏』를 편찬하여 원래의 310수에 11수를 더하여 321수로 만들고 상세한 註를 달아 놓았는데, 孫洙의 原刻本은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章燮의 註疏本이다. 『당시삼백수』는 77명의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唐代의 중요한 시인은 물론이고 帝王, 士大夫, 僧侶, 歌女, 無名氏 등 다양한 작가층이 망라되어 있다. 詩體에 있어서는 古體詩, 近體詩, 樂府詩를 포괄하고 있으며 初, 中, 盛, 晚唐의 시를 고루 안배했다. 내용면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시들이 唐代의 사회생활을 일정한 정도로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漢詩의 이해가 어렵고 漢詩 중에서도 唐詩의 이해가 더욱 어려운데,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唐詩의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무릇 번역의 大前提는 충실한 번역과 정확한 번역이다. 충실성과 정확성이란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막연한 개념이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원문의 내용이 歪曲됨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문이 당시 독자들에게 주었던 이해와 감동을, 번역문을 읽는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비슷하게나마 전달해줄 수 있어야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번역문이 원문과 等價的 가치를 지닐 수 있을 때 최상의 번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최상의 번역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실성과 정확성이다.

특히 漢文을 韓國語로 번역하는 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漢文과 韓國語는 형태적 구조가 전혀 다르다. 孤立語인 漢文에는 語形變化가 전혀 없고 接詞도 없어서 문법적 관계가 순전히 語順에 의해서 표시된다. 게다가 接續詞나 前置詞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문과 번역문의 等價的 價値를 기준으로 삼을 때 孤立語인 漢文을 膠着語인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漢詩의 번역이 더욱 어렵다. 漢詩는 그 자체가 엄격한 定型을 갖춘 韻文이다. 이런 한시를 散文式으로 번역해서는 좋은 번역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현재 慣行的으로 한시 번역문과 원문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번역문은 완전하지 않으니 원문과 대조해서 읽으시오’라는 말과 같다. 원문을 보지 않고 번역문만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번역, 즉 번역된 詩 자체가 하나의 문학작품이 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번역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일뿐이다.

4.

이런 어려움을 알고도 『당시삼백수』의 譯註를 시도한 것은 어쩌면 무모한 蠻勇일 수도 있다. 그러나 蠻勇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번역에 착수한 것은 『당시삼백수』의 중요성 때문이다. 韓國漢文學의 大宗은 漢詩인데 이 韓國漢詩는 대부분 唐詩를 典範으로 삼아 창작되었다. 그러므로 唐詩를 모르고는 한국한문학을 연구할 수 없다. 필자는 대학 재직 시절, 漢文學科 大學院生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唐詩를 강독한 적이 있다. 그만큼 연구자들에게 唐詩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중국문학의 眞髓라 할 수 있는 唐詩는 漢文學 전공자들의 연구대상 일뿐만 아니라 漢字文化圈에 속해있는 일반인들에게도 必讀의 教養物임에 틀림없다.

『당시삼백수』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제대로 된 번역본이 나와 있지 않다. 유일한 번역본이 1991년에 출간된 『韓譯 唐詩三百首』인데, 이 책은 章燮의 註疎本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臺灣의 邱燮友 교수가 白話文으로 譯註한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말하자면 二重翻譯인 셈인데 나름대로 충실하게 번역하여 학계에 공헌을 했으나 邱燮友 교수의 해석과 주석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어설픈게 번역에 착수했지만 역시 ‘충실하고 정확한’ 번역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필자와 5명의 젊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애를 썼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그야말로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번역문을 가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젊은 연구자들의 날카로운 시각에 적지 않은 자극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래도 ‘눈이 조금은 더 밝은’ 필자가 번역문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完稿를 확정지었다. 원래 詩라는 것이 애매한 곳이 많은데다가 漢詩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허다했다. 그래서 100여 종에 가까운 중국 측 연구서를 참조했지만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도 詩 한 구절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詩란 본래 이러한 것이다’라 自慰하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하고 절충하여 번역했지만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번역이라 자부한다.

한 가지 조그마한 성과라면, ‘集評’란을 실어서 해당 詩에 대한 중국 문인들의 評과 우리나라 학자들의 評文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수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190여 면에 달하는 詩語索引, 題目索引, 作家索引, 註釋索引을 작성하여 唐詩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했다. 특히 詩語索引에 많은 공을 들였다. 기존의 索引에서처럼 人名, 地名, 一般單語를 모두 포함하되, 해당 單語가 포함되어 쓰인 用例를 두루 표제어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洞門高閣靄餘輝’라는 원문의 경우에 ‘洞門’, ‘高閣’, ‘餘輝’를 표제어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洞門高閣’, ‘靄餘輝’도 표제어로 뽑았다. 또한 ‘洞庭’이란 표제의 고유명사에는 ‘洞庭連天’, ‘洞庭樹’, ‘洞庭水’, ‘洞庭秋水’ 등의 관련 用例가 모두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詩語活用辭典의 성격을 겸하도록 했다.

이 책이 唐詩의 實體에 10분의 1이라도 접근했다면 다행이겠다. 번역하면서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唐詩가 왜 좋은가를 어렵듯이 알았다는 사실과 唐詩의 번역이 왜 어려운가를 절감했다는 사실이다.

《通鑑節要》를 完譯하고

成百曉 (海東經史研究所 所長)

《通鑑節要》는 少微先生으로 알려진 江贄가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節要하여 편집한 것이다. 江贄는 北宋 때 崇安縣 사람으로 字가 叔圭인데, 太學에서 수학하였고 《易經》에 조예가 깊어 명성이 있었으나 은거하여 皇帝가 부르는데도 나아가지 않았다. 徽宗 政和 (1111~1117) 연간에 太史가 處士星인 少微星이 나타났다고 上奏하자, 徽宗은 遺逸인 處士를 천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江贄가 세 번 초빙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으니, 徽宗은 그에게 少微先生이라는 칭호를 하사하였다. 이 때문에 그가 엮은 《通鑑節要》를 少微通鑑이라고 하고 또 江氏史라고도 칭했다 한다.

《通鑑節要》의 바탕이 된 《資治通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司馬光은 司馬溫公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로 송나라 英宗·神宗·哲宗 연대의 名臣이다.

司馬光은 역대의 史書가 번잡하여 人主들이 두루 볼 수 없음을 우려한 나머지 戰國時代부터 秦나라 二世까지를, 《春秋左傳》의 체제를 본받아 通志 8권을 지어 바치자, 神宗은 古今의 歷史를 통하여 百王의 鑑戒가 된다 하여 《資治通鑑》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아울러 序文을 친히 써주는 영광을 베풀었다.

司馬光은 이 《資治通鑑》을 편찬하기 위하여 英宗 治平 3년(1066)부터 神宗 元豐 7년(1084)까지 19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였으며, 이 편찬사업에는 수많은 碩學들이 동원되고, 엄청난 量의 史料가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資治通鑑》은 周 威烈王 23년(B.C. 403)에서 시작하여 五代的 周世宗 顯德 6년(969)에 걸친 1362년간의 史蹟을 編年體로 엮은 一大通史이다. 그 내용은 周나라에서 秦·漢을 거쳐 後周에 이르기까지 王朝 一代를 1紀로 하여 모두 16紀로 나누어 軍國大事와 君臣言行을 年月日에 따라 기록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周紀(戰國) 5권, 秦紀 3권, 漢紀 60권, 魏紀 10권, 晉紀 40권, 宋紀(南北朝) 16권, 齊紀 10권, 梁紀 22권, 陳紀 10권, 隋紀 10권, 唐紀 18권, 後梁紀 6권, 後唐紀 8권, 後晉紀 4권, 後周紀 5권인데, 모두 16紀 113主, 294卷의 本書와 目錄 30권, 考異 30권을 합하여 354권이 되는 大作이다.

1. 《通鑑節要》의 著者和 編輯 體裁

이 《通鑑節要》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司馬光이 편찬한 294권의 《資治通鑑》을 50권으로 요약한 것이다. 《資治通鑑》은 周나라 威烈王 23년(B.C. 403)부터 五代時代 周나라가 망하던 顯德 6년(959)까지 장장 1362년 동안의 역사를 총망라한 編年體 史書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후인들이 쉽게 읽을 수 없었다. 江贇은 이를 염려하여 《通鑑節要》를 지었다 한다. 江鎔은 《通鑑節要》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資治通鑑》 한 책은 紀傳體를 바꾸어 編年體로 만들어서 수천년 동안의 興亡과 治亂이 환하게 눈 앞에 나와 있으니, 진실로 歷史學의 綱領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編帙이 매우 많아 두루 보기가 쉽지 않다. 후세의 君子들이 일찍이 너무 많은 것을 줄여 요점을 취했으나 그 사이에 상세한 것은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간략한 것은 또 너무 소략해서 문제였으니, 배우는 자들이 나쁘게 여겼다. 少微先生 江氏의 家塾에 《通鑑節要》가 있는 바, 상세하고 간략함이 적당하여 兩漢과 隋·唐에 있어서는 精華가 다 구비되었고 六朝와 五대에 있어서는 本末이 모두 나와 있다. 그후 建寧公 默이 晦庵先生(朱熹)의 문하에서 受學할 적에 일찍이 이 책을 가지고 질정하니, 朱先生은 크게 감탄하고 칭찬하였다. 이로부터 士友들이 다투어 서로 傳寫해서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다. 지금 南山主人 淵은 다시 이 책을 취하여 더 보태고 潤色하며, 각종 史書의 表와 志, 序와 贊을 더 넣고 名公들의 의논과 音註를 더 넣어서 간략하고 명백하며 得失이 분명하니, 이것을 家庭에서 가르치는 책으로 삼았다.”

축약한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周紀 5권을 2권으로, 秦紀 3권을 1권으로, 漢紀 60권과 魏紀 10권을 漢紀 22권으로, 晉紀 40권을 5권으로, 宋紀 16권과 齊紀 10권을 1권으로, 梁紀 22권을 1권으로, 陳紀 10권을 1권으로, 隋紀 8권을 1권으로, 唐紀 81권을 14권으로, 後梁紀 8권과 後漢紀 4권을 1권으로, 後周紀 5권을 1권으로 하여 도합 50권으로 엮었다.

이중 漢紀 22권과 唐紀 14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漢·唐 위주로 엮여졌으며, 六朝와 五대에 있어서는 큰 사건이나 열거하는데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江鎔의 서문에 “兩漢과 隋·唐에 있어서는 精華가 모두 갖추어졌고 六朝와

周紀	5권	2권
秦紀	3권	1권
漢紀	60권	漢紀 22권
魏紀	10권	
晉紀	40권	5권
宋紀	16권	1권
齊紀	10권	
梁紀	22권	1권
陳紀	10권	1권
隋紀	8권	1권
唐紀	81권	14권
後梁紀	8권	1권
後漢紀	4권	
後周紀	5권	1권
합		50권

五代에 있어서는 本末이 다 들어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江鎔의 서문을 보면 建寧公 江黈이 朱子の 門下에 출입하면서 이 책을 朱子에게 질정하였고 그후 南山主人 江淵이 다시 윤색을 가하여 여러 史書의 表·志·序·贊과 유명한 분들의 論評 및 音註를 붙인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는 이 책이 《資治通鑑》을 따라 後漢이 망하자 魏나라의 曹丕에게 정통을 주었으나 뒤에는 朱子の 《通鑑綱目》의 체제를 따라 이를 바꾸었으며, 新나라의 王莽과 女主人 呂后, 唐나라를 周나라로 개칭한 則天武后에 대해서도 정통성이 결여되었다 하여 연도를 표기할 적에 干支 아래에 小字雙行으로 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떠서 周나라가 망한 뒤에 곧바로 秦紀로 쓰지 않고 東周君 7년을 더 넣고 東周가 망한 뒤에야 비로소 周나라가 망한 것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南宮靖一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 하나 《通鑑綱目》에도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通鑑節要》는 그후 여러번 修正과 潤色을 가하여 비로소 완전한 책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江氏 집안에서 자제들을 가르치는 책으로 이용되었을 뿐 중국에서는 크게 유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인 것으로 보인다.

李德懋는 《靑莊館全書》 제3권에 실려있는 福建의 商人 黃森과의 問答記에서 “《通鑑》이나 《史略》을 읽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通鑑》은 바로 《少微通鑑節要》이니, 우리나라에서는 蒙學에 반드시 《通鑑節要》와 《史略》을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묻은 것이다. 於于 柳夢寅은 ‘《通鑑節要》나 《史略》은 우리나라에서는 숭상하지만 중국에서는 숭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하더니, 지금 이 사람의 답변을 들어보니, 과연 그렇다.” 하였다.

2. 《通鑑節要》의 刊行과 우리나라에 미친 影響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通鑑節要》는 중국에서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板本을 기준할 수 밖에 없다.

《通鑑節要》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李詹(1345~1405)의 《雙梅堂集》 권25에 少微通鑑跋이 있어 고려시대에 이미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通鑑節要》의 판각 연구가 별로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말한 판본은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甲寅字本이고 하나는 春坊藏板의 春坊本이다. 이 중에도 본서에서 底本으로 사용한 甲寅字本이 가장 善本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정식 명칭은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로 眉山 史炤가 音釋하고

鄱陽 王逢이 輯義하고 京兆 劉剡이 增校하여 明나라 宣德 3년(1428)에 간행한 것으로, 이를 朝鮮에서 重刊한 것이나 刊年은 미상이다.

이 책의 특징은 史論이 많이 첨부되었다는 점이다. 즉 史實 기술의 사이사이에 그와 연관된 논평을 가한 것이다. 이 史論에는 班固의 《漢書》와 范曄의 《後漢書》에 나오는 論贊은 물론이고, 東萊 呂祖謙과 致堂 胡寅, 老泉 蘇洵과 東坡 蘇軾, 龜山 楊時, 南軒 張栻, 尹起莘 등 유명한 史家와 文章家 및 性理學者 들의 논평이 상당수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頭註에 글자의 뜻풀이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에 비하여 春坊本은 체제는 대동소이하나 史論에 溫公曰만 싣고 기타의 것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頭註가 없고 小字雙行의 註와 附註에는 오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독해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附註에는 史論을 주석한 부분이 있는데, 史論은 삭제하였으면서 주석은 甲寅字本을 따라 그대로 두었으므로 주석의 내용이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甲寅字本의 표시로 보아 별도의 표시가 없는 註는 史炤가 단 것이고, 輯義(釋義)는 王逢이 단 것이며, 新增 등의 표시가 있는 史論은 劉剡이 단 것으로 보인다. 다만 附註는 누가 단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본서는 위의 두 본을 모두 참고하여 甲寅字本을 底本으로 하되 《通鑑要解》를 추가하였으며, 현재 春坊本이 流行함을 감안하여 溫公曰은 本文과 같이 大字로 표기하였으나 기타의 史論은 글자 크기를 약간 줄였다. 그리고 글자의 간단한 훈이나 음은 모두 싣지 않았으며, 小字雙行으로 중간에 실려 있는 주석은 단락이 끝나는 곳에 붙였음을 밝혀둔다.

이 《通鑑節要》는 《資治通鑑》의 방대한 내용을 초학자들이 읽기 쉽게 節要하여 좋은 평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史評을 많이 실어 학자들의 史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李圭景은 그의 저서인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자기 할아버지인 李德懋의 《耳目口心書》에 “《少微通鑑節要》가 글은 비록 소략하지만 기록된 史論이 매우 좋은 것이 많은데 중국에는 벌써 이 책이 모두 없어졌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우리 선인들이 이 책을 얼마나 정독했는지는 여러 기록에 보인다. 蘇世讓은 《陽谷集》 권14 雜著에서 “圃亭은 나의 형인 敬之(世恭)씨의 호이다. 형은 어려서부터 仲兄인 困庵公(世良)에게 수학하였는데, 독서를 열심히 하여 《孟子》와 韓文(韓愈의 문집), 《少微通鑑》에 더욱 익숙하여 모두 背誦했다.” 하였다.

특히 이 책은 文理 터득에 더욱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眉巖 柳希春은 〈庭訓〉에서 “나는 9세 때부터 《通鑑節要》를 배웠는데 11세에 이르러 처음으로 文勢와 語脈을 알아 여러 책을 볼 적에 막히는 것이 드물었으니, 이는 재주가 뛰어나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敎導를 잘

한 덕분이었다.” 하였으며, 또 “우리나라 아동들은 먼저 字類(千字文 따위)를 배우고 다음에 聯珠詩格을 배우고 다음에 《少微通鑑》을 읽어 문리를 터득한다.” 하였다.

《栗谷全書》 32권 語錄 下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栗谷先生이 李成春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아직 문리가 통투하지 못하니, 잠시 《聖學輯要》를 중단하고 《通鑑》을 읽는 것이 좋겠다. 학문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문리를 통한 뒤에야 지식이 날로 진전되고 소견이 날로 밝아지므로 공부하기가 쉽고 자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글 뜻을 통달하지 못하고 먼저 道를 찾으려고 하면 마음이 막히고 식견이 어두워져서 비록 道를 찾으려 하나 할 수 없다.’”

율곡이 말씀한 通鑑은 역시 《通鑑節要》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3. 《通鑑節要》의 문제점

첫째 3백 권에 가까운 《資治通鑑》을 6분의 1로 節要하였기 때문에 문맥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웬만한 사건은 거의 모두 통째로 빠지게 되었다. 또 문장을 생략하거나 변형시킨 것에서 불합리한 점이 자주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先人들 중에는 《通鑑節要》를 비판한 분이 많다. 柳希春은 〈經筵日記〉에서 《少微通鑑》에 오류가 많음을 말하고 특히 釋義에 오류가 많음을 지적하였으며, 李德懋 또한 《耳目口心書》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史書의 자세하고 간략함이 아울러 구비된 것은 이 《通鑑節要》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나는 근일에 이웃 아이들에게 이 글을 가르쳐보고 비로소 완전하지 못한 글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史略》과 《通鑑節要》가 모두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通鑑節要》를 가장 신랄히 비판한 학자는 茶山 丁若鏞이다. 그의 《興猶堂全書》 제1집 通鑑節要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 책은 司馬溫公의 《資治通鑑》을 藍本으로 삼았으나 그 義例는 도리어 朱子の 《綱目》을 기준하였다. 그리하여 三國에 있어 正統은 蜀漢에 주고 記事는 曹魏를 위주로 하여 주·객이 바뀌고 王·賊이 전도됨으로써 의리에 온당치 못하다. 기타 연월의 착오와 사실의 와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논란한 필요조차 없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通鑑節要》가 《史略》과 함께 이처럼 많이 읽혔을까. 역시 漢文 文理 터득을 위해서이며, 또한 《資治通鑑》 등을 쉽게 접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9, 10세 때에 대부분 15책으로 엮어진 《通鑑節要》를 읽는데, 대체로 3책까지를 읽는다. 이 3책에서 문리가 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깊이 믿고 있었다. 이 때문에 몇 년을 걸려서도 再讀 三讀하는 분을 보았다. 또한 서책이 귀했던 관계로 4책 이후는 구하기 매우 어려웠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通鑑節要》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리학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초학자들이 기초한문으로 공부하였으나 書誌學的으로 볼 때 그리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한문 문리도 터득하고 중국의 역사도 대강이나마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金科玉條처럼 여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골에서 한문을 배운 분들은 대부분 통감하면 《通鑑節要》일 뿐 《資治通鑑》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三國志》하면 《演義三國志》만 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少微通鑑》이란 명칭도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李德懋도 《耳目口心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고루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資治通鑑》이 《通鑑》인 것을 알지 못하고 少微의 《通鑑節要》를 通鑑이라 하여 그 제목을 通鑑이라고 쓰니, 진짜 通鑑은 무슨 이름으로 부르겠는가. 혹은 少微節要라고 부르면 본래 무슨 글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힌 《通鑑節要》와 《史略》 및 《古文眞寶》는 중국에서는 거의 유행하지 않는 책들이다.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古文의 文理 터득이 쉬웠던 관계로 史書에 있어서는 正史나 《資治通鑑》을, 문장에 있어서는 《文選》이나 文集을 읽었으며, 축약한 책은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日本에서는 《史略》과 《古文眞寶》가 흥행한 반면 《通鑑節要》는 잘 읽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史略》과 《古文眞寶》는 漢文大系에 들어있으나 《通鑑節要》를 연구한 기록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이 《通鑑節要》를 翻譯하기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비로소 完譯을 보게 되었다. 本人은 어려서 先親에게 本書를 배우면서 本文도 본문이지만 釋義 등의 註釋이 더욱 난해하였다. 原文을 준비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註釋을 보면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간혹 先親에게 여쭙어보면 誤字가 있는 듯하다고만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資治通鑑》을 구해볼 수도 없고 辭典類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알 길이 없었다.

그후 1977년 上京하여 民族文化推進會 附設 國譯研修院에 들어오면서 頭註부터 本書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金先生은 本書에 많은 관심을 갖고 講義에 열정을 다하셨는데 胡三省이 주석한 資治通鑑本을 주로 참고하였다. 그후 金先生은 本書에 標點과 句讀 작업을 하여 두 책을 간행하였으며 번역본도 한 책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完譯을 하지는 않았다.

本人은 그때부터 본서를 完譯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傳統文化研究會에서 이 책을 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번역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資治通鑑》을 대충 축약하다보니 文章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용 또한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註釋에 誤字가 많아 중국에서 간행된 《資治通鑑集覽》을 일일이 대조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中國의 中華書局에서 간행된 標點本 《資治通鑑》과 또다른 白話文 번역본이 있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대본 역시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된 癸酉字本の 15책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겪었던 일을 소개할까 한다.

本文은 그래도 참고할 서적이 있었지만 부목으로 붙인 史論이 정작 더 어려웠다. 그 중에는 맨앞에 있는 陽節潘氏의 著 《通鑑總論》에 있는데 4,400여 자에 달하는 長篇의 史論이다. 여기에는 역대 제왕들의 是非得失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평론이 있는데, 中國 역사를 꿰뚫지 않으면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는다. 《通鑑節要》를 일부 번역하였으나 이 내용은 아무도 번역하지 않았으므로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이 가운데 끝부분에 “廣微가 천하의 소년 중에 괴수가 되자 敬仲은 경계하기를 ‘반드시 千里 生民의 중한 임무를 생각하라.’ 하였고, 希元이 운명을 가지고 日者에게 묻자 和叔은 ‘모름지기 富貴와 利達의 마음을 잊으라.’고 당부하였다. 이 때문에 建安(眞德秀)과 青田(袁甫)이 함께 백세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廣微魁天下於少年 敬仲戒之 必念千里生民之寄 希元以命訊 日者 和叔教以須忘富貴利達之心 是故建安與青田俱爲百世師]”라는 내용이 있는데, 廣微가 누구인지 敬仲은 누구인지 希元과 和叔, 建安과 青田은 또 누구의 字인지 號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얼마를 고생한 끝에 다음과 같은 주를 달 수 있었다.

- 1) 〔譯註〕 廣微魁天下於少年……必念千里生民之寄 : 廣微는 袁甫의 字이며 敬仲은 楊簡의 자이다. 袁甫는 소년시절 장원급제하였는데, 楊簡에게 수학하였다. 袁甫가 宋나라 理宗 때에 青田縣尹이 되자, 楊簡은 그에게 경계하기를 “반드시 千里의 백성들을 맡은 책임을 생각하라.” 하였다. 袁甫는 이후 青田先生으로 불리웠다.
- 2) 〔譯註〕 希元……富貴利達之心 : 希元은 眞德秀의 字이고 和叔은 袁燮의 자이며, 日者는 四柱를 보는 사람을 이른다. 眞德秀가 급제하기 전에 자신의 운명을 사주쟁이에 물었는데, 袁燮은 眞德秀에게 부디 富貴와 利達의 마음을 잊으라고 경계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불을 밝혀 아침까지 이른 것은 바로 雲長의 큰 절개이고, 옷을 물리쳐 얼어죽은 것은 실로 陳三의 작은 일이다.[明燭以達旦 乃雲長之大節 卻衣而凍死 實陳三之細事]”

라고 하였는데 雲長이 關羽의 字인줄 알지만 陳三이란 사람은 어떠한 사전에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 얼마가 지난 뒤에야 陳師道임을 알고 다음과 같은 주를 달 수 있었다.

- 1) 〔譯註〕 卻衣而凍死 實陳三之細事：陳三은 陳師道로 字가 無己인데 徽宗의 郊祭에 따라갔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同壻間인 趙挺之가 그에게 한 갓옷을 주었으나 陳師道는 그의 탐욕스러움을 혐의하여 퇴각하였다가 얼어죽었다. 陳師道는 형제간에 세 번째였으므로 陳三이라 칭한 것으로 보인다.

《通鑑節要》는 史論이 좋다고 評한 先人들이 있기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번역하였다. 심지어는 《十八史略》의 評까지 실었다. 물론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랐다. 誤字가 많은 釋義는 하나하나 대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대조한다고 하였지만 참고에 불과하였다. 안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참고하는 臺本에도 오류가 없지 않았다.

要解와 頭註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참고용 도서들이다. 물론 여기에도 오탐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 先人들이 이 책을 읽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通鑑節要》는 옛날부터 열두 토라 하였다. 즉 토씨에 있어 讀者마다 다르게 붙인다는 뜻이다. 이것은 本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역사책의 공통된 문제이다. 사건은 언제나 原因과 結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락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다보니 ‘~이어늘’, ‘~이러니’, ‘한대’ 등의 토씨로 文章이 계속 이어지며, 中國의 標點本은 너무 자주 끊어 文脈이 이어지지 않는다.

《通鑑節要》는 漢·唐 위주로 엮어진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 중 漢나라의 4백 년과 唐나라의 3백 년이 治世라고 할 수 있으며 賢명한 君主들의 雅量과 經綸, 명재상들의 忠貞과 識見, 名臣들의 直諫, 그리고 학자들의 정치이론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역사상 최고의 혼란기로 알려진 五代時代에는 사건 사실은 매우 복잡하여 《資治通鑑》에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本書에서는 49권과 50권으로 달랑 두 권에 불과하며 南北朝時代 역시 대폭 절묘하였다.

이 때문에 이들 王朝에 대한 기록은 앞 뒤 문장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資治通鑑》을 다 보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반면, 本書는 戰國時代 이후 五代時代 전까지의 中國 역사를 쉽게 독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것은 中國의 歷史書이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典籍이 중국 文獻의 土臺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정치사상과 제도 역시 이들 史書에 뿌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前漢의 文帝와 唐나라의 太宗은 역대 君主 중에 최고의 賢君으로 일컬어진다. 文帝 때에는 法 집행을 철저히 지킨 張釋之와 젊은 정치 이론가인 賈誼가 있으며, 唐나라에는 기라성 같은 名臣들이 즐비하다. 특히 魏徵이라는 諫官은 直言을 잘하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直諫을 수용한 太宗의 도량 또한 帝王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魏徵이 죽자 太宗은 그의 功德을 칭송하는 碑文을 지어 碑石에 직접 쓰기까지 하였으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구리로 거울을 만들어 보면 衣冠을 整齊할 수 있고 옛날을 거울로 삼으면 前代의 興亡盛衰를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 있다. 짐은 항상 이 세 가지 거울을 확보하여 자신의 잘못을 방지하였는데 이제 魏徵이 죽었으니, 짐은 한 거울을 잃었다.” 하며, 애도의 심정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漢 武帝 때의 汲黯과 唐 憲宗 때의 陸贄 또한 간언을 잘하기로 이름났다. 특히 陸贄의 건의는 名文 중의 名文으로 알려져 〈陸宣公奏議〉라는 책으로 간행되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銅活字로 찍어내어 士大夫들의 必讀書로 인식되었다. 賈誼가 文帝에게 올린 上疏文은 가장 장편으로 本書에 실려있으며 唐 憲宗 때에 부처의 사리를 궁중으로 들여오는 것을 반대한 韓愈의 〈論佛骨表〉는 원래 축약하여 실었으나 評論에 전편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韓愈와 함께 古文運動으로 유명한 柳宗元의 〈梓人傳〉과 〈種樹郭橐駝傳〉 역시 이 책에 실려있다. 이 외에도 유명한 정치가들의 사상과 철학이 무수히 나와 있다. 얼마 전 太宗의 《貞觀政要》라는 책이 번역되어 統治者들이 읽어야 할 책으로 관심을 끌었다. 本書와 서로 참고하여 읽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本書는 漢文 文理 터득에 큰 도움을 주는 책으로 알려져 우리 先人들이 必讀書로 인식하였으며, 내용 또한 歷代의 治亂과 興亡盛衰에 관한 것이어서 朝鮮朝 武科의 필수과목이기도 하였다.

되돌아보면 장장 6년 만에 《通鑑節要》를 완역하게 되었다. 전통문화연구회의 東洋古典에 대한 확고한 의지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오타자가 많은 주석을 빼고 번역해도 될 터인데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셨기에 東洋古典譯註叢書가 또 하나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原稿를 정리해준 朴勝珠 선생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編輯과 校正을 도와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國語學的 見地에서 본 國語 基本法

金慶洙 (중앙대 명예교수)

I. 국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가

1. 국어의 개념

한반도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韓國語란 어떤 말인가? 더구나 한반도를 벗어나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민족의 한국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어 개념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국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국어기본법이 잘못 제정되어 한글과 국어의 의미 혼란을 야기하는 시점에서 국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어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은 매우 적절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어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韓國人이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韓國語는 韓+國語로 볼 수도 있고, 韓國+語로도 구별할 수 있다. 韓은 마한, 변한, 진한에서 유래한 韓民族의 역사성이 담긴 의미가 강하다. 거기에 담긴 國語는 역사성을 지닌 우리말을 뜻한다. 반면에 韓國+語는 한국이라는 지역의 의미와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의 개념이 들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의미로 보아도 韓國語는 한국을 모국으로하는 韓國人이 사용하는 한민족의 國語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용하는 주체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 상관 없이 그들이 쓰는 언어가 韓國語이다.

그에 비해 國語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개념이 포함된 말로 한반도 안에서 사용하는 우리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라라는 말도 원시 사회를 벗어난 근대 국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를 좀 더 구분하자면 외국인이나 해외 동포들이 사용하는 우리말을 한국어라 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우리말을 國語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國語란 국가의 개념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國語라는 말도 그리 간단히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한자가 있어 그 조어가 가능했다. 日本이 近代化를 이루면서 우리나라 중국보다 먼저 서구 문물을 접하게 되었다. 일본에 없는 수많은 서구의 문화어가 쏟아져 들어오자 이를 적절한 그들의 말로 번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language라는 말의 적절한 日語인 고유어가 없자 이를 言語라는 말로의 조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일본도 우리처럼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유어에 없는 말이면 한자를 활용해 조어할 수 있었다. 이런 작업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문자인 한자가 있어 가능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서구 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 근대 국가를 이룬 것은 일본이다. 그것이 소위 明治維新(1853-1877)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일본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국어라 지칭하는 國語라는 말이 없는 것을 알고 많은 학자들의 논의를 거쳐 근대 국가로서의 일본의 언어 문장이라는 뜻으로 國語라는 말을 창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것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國語라는 말이 전파된 배경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말하는 國語도 근대화 이후의 언어 문장이라는 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근대화를 갑오경장으로 잡는다면 엄밀하게 따져서 그 이전은 古文 또는 古語이고 그 이후를 國語라 할 수 있다.

2. 國語의 내용은 어떤 구조인가

우리의 국어인 韓國語는 固有語로 된 한글과 수천 년간 차용하여 써 온 漢字語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둘이 상호 결합하여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든 문자로, 우리 고유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로 되어 있다. 당시까지는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었으므로 표기에서 중국의 한자를 빌어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백성들에게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여 보급했으니 그 공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발음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모두 기록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창안되어 그 논리성이 뛰어나며 자음과 모음에 깊은 철학성이 들어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더구나 세계 어느 민족의 언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반면에 漢字語는 표의 문자로서 늦추어 잡아도 이천 년 이전인 한사군 시대에 이미 도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었다. 향찰이나 이두 등으로 표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문서는 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삼국시대나 고려 시대의 기록은 한문으로 밖에 기록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읽기 위하여도 한문 전수를 강조하고, 전통문화를 논의하는 것도 이런 표기문자 때문이기도 하다. 한글이 창제되고 표기 수단이 변화하며 현토가 강조되고 점점 국한문 혼용체로 바뀌어 한문이 한자로 그리고 혼용으로 문자 표기가 변화해 왔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인 韓國語는 표음 문자인 한글과 표의 문자인 한자를 섞어 사용하고

있는 특이한 언어 체계를 지닌 언어임을 알 수 있다. 표음문자는 소리글자라고 하는 것으로 대단한 장점을 지니고 있고, 표음 문자는 뜻글자라 하여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는 이 두 문자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우수한 언어이고 이는 세계에 널리 자랑할 만한 문자이다. 근자에 국력의 신장과 함께 동남아에서의 한국어의 열풍은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한글은 고유어로서 매우 아름다운 말이 많다. 개울, 시내, 얼음, 열매, 꽃, 가슴, 허리, 스승, 지아비, 추녀, 서까래, 파랗다, 보드랍다, 곱다, 가늘다, 후미지다 등등 생활 주변의 감각적 사물에 대한 어휘들이 대부분이다. 이 어휘들은 우리의 정서를 드러내고 민족혼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전통 서정시인 이룰테면 소월, 미당, 지훈, 목월 등등 시인들의 시구에서 사용된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새삼 놀라기도 한다. 이러한 고유어의 특성은 옛 문화를 지키고 우리 아득한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전해 주고 있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이러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어휘표현에 한계가 있음도 사실이다. 어휘 자체가 빈약하여 학술적 고급용어나 새로운 외래문화 도입에 그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알맞은 번역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글이 지니는 어휘적 한계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말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漢字語는 좀 더 고급스런 언어를 표현하고 민족 정서를 표출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倫理, 道德, 哲學, 科學, 藝術 등등처럼 추상적 事象이나 학술적 언어에서 주로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는 이렇게 한글과 한자어가 상호 보완하며,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 문자의 커다란 장점이다. 한국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표음 문자인 한글은 말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반면에 함축된 의미를 포괄하기 어려운가 하면, 표음문자인 한자어는 글자마다 의미를 독립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처음에는 익히기가 어렵고 글자의 모양이 복잡하여 쉬 접근하기가 어려운 듯하다. 그러나 이 표음문자는 한 번 익혀두면 잘 잊히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하나의 글자만 알아도 많은 낱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표의문자인 한자어는 수천 년 우리 역사와 함께 써 온 것이다. 거기다가 표의 문자가 가지는 특징도 있다. 사실 이천 년 이상을 우리가 차용하여 쓴 한자어는 이미 우리 문자화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 속에 동화된 우리의 음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생활에 사용해온 漢字를 國字라고 하는 것이다. 이천 년을 함께 하고 동화하지 않을 문화 현상이 있을까? 만일 그 성질상 동화할 수 없다면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또 이 표의문자는 한 글자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만 익혀도 수십 개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적어도 그 글자가 들어간 단어 뜻의 반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유추하여 그 말의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도 있다. 가령 論자 하나만 알아도 論評 論說 論理 論述 또는 討論 叢論 公論 言論 등에서 그 단어 구조의 뜻의 반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단어를 이룬 두 글자의 훈을 모두 알면 순간적으로 의미가 파악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한자는 조어력이 대단하다. 이러한 한자의 특성은 근대 일본어의 서구 문화 수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무리 새로운 문화어라 하더라도 한자만 잘 활용하면 그 내용의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서구어의 중국어화를 보아도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만으로 조어를 한다고 해도 그 표현 효과가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처럼 우리말화한 한자를 사용하고, 응용하여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3. 한글 전용만이 애국적인가

그런데 우리는 문자 정책을 두고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 사이에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문자 정책은 상호 보완하며 병행해야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자 정책은 그러지 못하였다. 여기에 정책 당국의 편향적 문자 정책이 혼선을 빚었다. 그것이 바로 한글 전용 시책이다. 우리가 문제 삼는 국어기본법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시절 한글의 수난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애국지사와 한글학자들이 고통을 받은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희생으로 민족혼이 살아 숨쉬고 서민 대중의 문명을 깨우쳐 준 한글이 살아 난 것이다. 이보다 큰 애국애족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애국심이 오로지 한글전용으로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광복이 되고 48년 10월에 만들어진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한글 전용이 강력하게 주장되어 왔다. 그 당시는 광복에 대한 흥분과 시대 분위기로 한글을 옹호하는 것이 조금도 거부감이 없었다.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당시에 한자를 고수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글을 지지하지 않은 애국지사가 없었다. 심지어 한자 혼용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민중들 모두가 한글 말살 정책에 분기한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국한문 혼용을 주장하는 많은 선각자들도 한글 수호에 앞장섰었다. 日人들이 노린 것은 한글을 통한 한국 정신의 말살이었다. 그 중심에

한글이 있었다. 그러나 일인들은 한국정신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간에 말살하려 했다. 우리가 식민사관이라 비판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왜곡 현상도 한국 정신의 말살에 그 목표가 있었다. 심지어 한민족 혼이 담긴 민중들이 행하던 여러 가지 민속 행위나, 무명 애국시인이 운영하던 서원이나 서당, 모두가 그들의 폄훼 대상이었다. 유행가의 가사에서부터 소설 내용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애국 내용은 철저한 배척의 대상이었다.

이런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함에 있어, 한글 전용만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어 도입이나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누구나 한글 전용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 정책은 한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모든 국가의 정책이 이 문자로 비롯되고 국가의 정체성은 물론 국민의 의식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한글만으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다.

한글만으로는 우리의 사상과 정서를 기술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문화전파란 높은 문화가 낮은 문화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이다. 우리가 비록 찬란한 문화를 지닌 국가였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문화가 주도가 되어 세계에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밀 듯 몰려오는 외래 문화를 고유어만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자니 저절로 우리가 오래 전부터 차용해 온 한자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이웃인 일본은 이를 오래 전부터 간파하여 한자를 통한 문화 수용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있다. 우리가 한자를 차용해 온 문자라고 하지마는 이는 수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것이어서 우리말이나 다름이 없다. 오래되면 굳어지는 법이다. 이런 언어 현실을 무시하고 행정을 맡은 정부 차원에서 어문정책을 잘못 수립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혼선과 파행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책 당국이 2005년 1월에 제정한 국어기본법에도 나타났듯이 한글만으로는 표현이 어려운 것이 대단히 많다. 역으로 생각하면, 국어기본법 14조 단서 조항은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만으로는 공문서 표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한자와 외래어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공문서도 그러하거니와 고급 문화어를 받아들여 표현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앞선 문화를 수용하여, 보다 나은 문화 발전을 추구할 수가 없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등학교, 대학으로 갈수록 이 현상은 심해진다. 고유어인 한글만으로는 학문 발전을 위한 기술이 어렵다. 함축적 의미를 지닌 동양 사상은 물론이고 고도로 발

달된 과학용어들에 대한 우리말의 표현이 어렵다. 原子, 核, 滲透壓 따위만 해도 우리말로 표기하기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한글로 풀어 써 보아도 말이 길어지고 표현이 불명료한 어색한 말이 되고 만다.

그러자 한글전용 주장 측에서는 窮餘之策으로 이들 한자어를 한글로 쓰고 이를 우리말 곧 한글이라고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자어를 한글로 썼다고 고유어가 되지는 않는다. 망치는 가방에 있으나 꺼내 놓으나 망치이다. 뿐만 아니라 한글로만 적어 놓으면 의미 전달이 어렵다. 微分 積分을 미분 적분이라 썼다고 고유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적은 미분 적분의 단어를 보고 그 개념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작을 微, 나눌 分 해야 작게 나눈 것이 미분이로구나를 알고 쌓을 積 나눌 分 해야 나눈 것을 한 곳에 모으는 뜻임을 어렵듯이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어는 가능하면 병행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4. 한자는 관습 헌법상 국어이다.

지금까지 국어는 고유어 한자어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된 우리말임을 역설하였다. 고유어도 귀한 우리말임은 더 이상 채언이 필요 없다. 그러나, 고급 문화어나, 학술어의 수용에는 고유어보다 한자어나 한자말이 더욱 유용함도 밝혀졌다.

문제는 이 한자어와 한자가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오랜 세월 속에 사용되며 우리 문자로 역할했기 때문에 이는 다른 외래어나 외국어와는 다르다. 이를 우리는 관습상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다. 관습상 우리말이면 이를 누구나 배워야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한자교육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핵심이 되는 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憲法)에 위배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 헌법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빠짐없이 능력에 따라 고루고루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초등학교에서 누구나 익혀야 할 국자(國字)이며 도구교과(道具教科)인 한자 학습, 즉 국어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뒷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고 있으니 국

어학습권의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자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인성(人性)의 완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인데 이마저 기대할 수 없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향유권(享有權)을 얻지 못함도 큰 손실이다. 이는 다른 외국어(外國語)를 배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이이다.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한글전용론자들과 일부 동조자들은 문화어, 학술어 등의 제대로 된 표기 어휘를 개발하지도 못하면서 한자어 사용을 반대하고 있으니 문화한국의 미래에 대한 대책이 궁급하기까지 하다.

5. 한자는 국어이며 국자이다.

한자(漢字)는 당초에 외래문자이기는 하나 수천 년 동안 공용(公用)되어 우리 문자화된 글자이다.

국어의 범위, 특히 민족과 국민을 대표하는 말과 글을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다.

한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글인바, 이 언어 즉 국어의 말살은 그 민족과 국가의 말살로 이어지는 민족문화의 소멸이다. 이는 한 민족의 정체성인 문자의 변개(變改)로 문화의 뿌리를 말살하고, 자국의 사상(思想)을 주입하기 위한 방법임은 물론이다.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은 자국의 문자 정책을 올바로 수립,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전통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문자 정책의 혼란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한자와 한자어 사용을 등한시하게 되어 전통문화의 뿌리도 잃고, 우리의 정체성도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이 나라 국민의 자주성(自主性)을 어디에서 찾을지, 또한 장래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이나 진로를 어떻게 찾을지 극히 비관적이다.

한자어와 그 한자는 역사가 유구하다. 이는 한(韓)민족이 오늘날까지 2,300여 년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국자와 같은 문자다.

한자와 한자어는 고유문자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기 전부터 공용(公用)되었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계속 공용되어 온 문자다.

한자어처럼 꾸준히 사용된 것을 항상성이라 하는데, 항상성은 그 의미의 굴절 없이 사용되

어 음을 뜻한다. 한자의 공용의식은 한글전용법과 관계없이 국민의 머릿속에 계속 살아 있다. 역사상 아주 일시적으로만 있어온 한글전용은 표피적이고 일시적이며 그 내면은 한자문화의 실상이요 문화의 핵으로 항상 존재하여 온 것이다.

국어는 ‘한글 고유어 등 표기의 한글’과, ‘한자어의 한자’로 이루어진 우리 글이다. 국어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전통문화 창달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한자어의 한자는 우리의 국어이며 국자이다.

II. 국어개념의 정립과 국어기본법의 문제

국어 정책을 담은 국어기본법(國語基本法)은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은 국어의 개념에서 창조적 사고력이나 민족 문화 발전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어기본법은 헌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에도 어긋나는 법이라 판단된다.

앞에서도 강조했거니와 우리의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핵심이 되는 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憲法)에 위배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헌법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빠짐없이 능력에 따라 고루고루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초등학교에서 누구나 익혀야 할 국자(國字)이며 도구교과(道具教科)인 한자학습, 즉 국어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뒷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국어학습권의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자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인성(人性)의 완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인데 이마저 기대할 수 없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향유권(享有權)을 얻지 못함도 큰 손실이다. 이는 다른 외국어(外國語)를 배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이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국어기본법이 다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몇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바람으로 많은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도 나타나 있다.

1. 국어 개념의 정립

국어기본법의 제3조 제1항의 ‘국어(한국어)’의 정의에 한자어와 외래어를 분명하게 표기하고, 제3조 제2항의 ‘한글’의 정의 외에도 한자어의 ‘한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야 한다.

구분	현 안	개 정 안
수정 3조 1항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u>한국어를 말한다.</u>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u>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포함한 한국어를 말한다.</u>
유지 2조 2항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左同
신설 3조 3항		3. “한자”란 국어 중 한자어에 쓰인 <u>한자를 말한다.</u>

국어는 고유어와 수천 년간 우리말화된 한자어로 가를 수 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국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살과 뼈 중에서 하나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한자교육은 초등교육에서부터 부활시켜야 하며 기타의 외국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국어 정책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장점과 그 효용에 부합되도록 거시적이고 합목적적(合目的的)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언어로 귀화한 한자어의 한자는 고유문자인 훈민정음(한글)과 함께 우리의 국자임을 국어기본법 속에 명시해야 한다.

2. 어문규범의 범위 조정

국어기본법의 어문규정에 한글 및 한자의 표준 발음법과, 교육용 한자의 의미 및 표기법 등 한자어의 한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구 분	현 안	개 정 안
개정 3조 3항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u>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u>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u>국어맞춤법, 표준어규정, 한글 및 한자의 표준발음법, 교육용 한자의 범위와 의미 및 표기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u>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중국 일본 대만 등이 모두 ‘상용한자(常用漢字)’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상

용한자가 아닌 ‘한문교육용기초한자(漢文教育用基礎漢字)’만을 제정하고 있으며, 그 또한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한자의 사용이나 학습의 권리 박탈을 방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문규범의 범위에 한자의 표준 발음법과 ‘한문교육용기초한자’가 아닌, 상용한자(혹은 국어교육용 한자)의 의미 및 범위(글자수)와 그 표기법(표준자형 등)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국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3. 국어심의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

국어심의회의 권한과 인원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국어심의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야 하며 인원구성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여야 한다.

민족의 정체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일을 부처에 위임하고, 또 그 구성의 권한을 장관에게만 맡겨 일부 편향된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어문정책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회 구성 시 국민여론 등을 적극 수렴하여 위원을 선임하는 등 공정한 언어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외부적 영향이 없도록 하고, 어문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어문정책을 언어학 전문가들로만 심의해서는 안 된다. 언어학자는 물론이고 국문학자, 교육학자, 언론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정책 수립 시 현실과 부합된 정책이 창안되도록 해야 한다.

구분	현 안	개 정 안
개정 13조 1항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문화체육관광부</u> 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통령 직속기구로 국어심의회</u> (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3조 2항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u>대통령</u>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3조 4항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u>국어학·언어학</u>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u>국어국문학·한문학·교육학·언어학</u>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4. 공문서 및 교과서의 한글·한자 규범 조정

14조의 1항의 “모든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한글”을 “국어”로 바꾸어 “국어로 작성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이미 국어의 개념 속에 한글, 한자어, 외래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4조 2항의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를 “국어 사용에 관하여”로 바꾸어야 한다. 이상의 것은 국어의 개념부터 명확히 하여 명시한 후에야 적용이 가능하다.

구분	현 안	개 정 안
개정 14조 1항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u>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u>작성의 목적과 용도와 필요에 따라 한글 전용과 한글 한자 병용 또는 한글 한자 혼용을 할 수 있고, 괄호 안에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u>
개정 14조 2항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u>한글 사용에</u>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u>국어 사용에</u>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국어(한국어)’의 정의에 한자어를 분명하게 표기하고, ‘한글’의 정의 외에도 한자어의 ‘한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어문규정에 한자어의 한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국어심의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등의 일련의 정책적 변화를 통하여 국어기본법이 개선된다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21세기 동북아 한자문화권 시대를 맞아 세계화를 향한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으로 제시한 제도적 정비는 그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단기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한자교육의 주체가 될 각급 학교의 교원과 공무원, 사회에 곧 나서게 될 대학생, 그리고 한자교육 공백기에 공교육을 받아야 했던 많은 일반인이 손쉽게 한자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어교육 차원의 한자교육에 대한 시급한 방안 수립과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이들의 소홀함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아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어 어문정책에 대한 헌법학적 조명

崔大權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1. 머리말 - 문제의 제기

어느 개인이 자기의 뜻을 말과 글로 표기하려고 할 때 한글전용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그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느냐 어떠한의 문제도 전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몫이 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글전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헌법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타인과의 소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개인의 자유,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개인의 자기 계발(啓發) 내지 발전(發展)의 자유나 권리 등(헌법 제10조, 제37조제1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한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글전용의 강제가 초중고교육(이하 공교육)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뚜렷하게 부각된다. 그 경우에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가 가지는 자기 자식에 대하여 교육받게 할 교육권(헌법 제31조제2항)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를 제약받게 되는 까닭이다. 그 경우 국가는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헌법 전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책무(헌법 제10조 후문)를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사용할 국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태도·정책을 입법화한 국어기본법은 공문서의 경우에 한글전용을 강제하고 있다(국어기본법 제14조). 국가의 공문서 한글전용은 필경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 장점으로는 더 많은 수의 국민에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유리하리라고 판단된다. 한국의 거의 100%에 가까운 문자해독능력의 제고에 대한 한글의 기여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그 단점도 있다. 한자로는 다르나 한글발음으로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든지 다시 물어보아 바로 잡아야할 불필요한 불편 등 미처 열거하기 힘든 단점들이 있다. 지역명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어의 한자 어휘를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그 단점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또 현재 일반화된 컴퓨터의 경우에 한글사용은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방금 열거한 단점들이 부각되는 단점도 있을 것이다. 타자기가 보편적이었던 때 한글사용이 우리의 자랑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 등 한자전용의 나라에서 한자의 컴퓨터사용에 무슨 지장이 있어 그 점에서 한글전용인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중국 등에서는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 영어 알파벳을 먼저 입력해서 한자에 접속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글을 먼저 입력하고 한자를 접속하고 있는 경우와 유사해서 우리가 어문정책으로 한자혼용의 방침을 택한다고 해서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 등에서 한자사용 때문에 컴퓨터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공문서 한글전용의 국어기본법 조항은 한글전용이 주는 일정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그야말로 한국어이고 한국어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이며 한자어가 국어의 부분이라고 해서 한국어가 아닌 것이 아닐뿐더러 국어에서의 한자어 사용은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이며 전통문화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부분이라는 사실을 재차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어는 한편으로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헌법사항이며, 다른 한편으로 표기법을 포함하여 우리가 수백년 수천년을 써온 국어는 전통문화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고 국가는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책무(헌법 제9조)를 지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한글만의 공문서 표기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한글만의 표기방식이 어떻게 헌법사항이 아닌지 혹은 헌법적 규제로부터의 예외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아니하는 한 국어기본법 제14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책무는 정당화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지켜야하는 공공복리(국민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문제(헌법 제37조)인 것이다. 이처럼 한글전용의 공문서작성방식의 강요는 이것이 정당화되는 꼭 필요한 경우임을 거증하지 못하는 한 헌법 제9조 및 제37조제2항의 차원에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미래의 국민을 양성하는 공교육에서 한글전용정책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자를 이해하는 국민으로 양성된 국민이 가지는 장단점과 한글전용으로 성장한 국민이 가지는 장단점을 비교하면 그 점이 분명해진다. 이 점은 그동안 국한문병용의 한자교육논자들이 분석·연구해 놓은 결과물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⁶⁾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 어휘의 70%가 한자어이고 전문영역에 이르면 예컨대 법률용어의 95%가 한자어인 점을 고려하면 일상 사용하는 한국어

6) 吳之湖, 石井 勳(申採湜 譯), **漢字教育 立國**(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3); 李應百, **漢字를 아는 것이 國力이다**(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4); 南廣祐 外, **漢字文盲 이대로 좋은가-문화시대와 한자교육**(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5); 李熙昇 外, **漢字는 國語의 기본이다**(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5); 國語國字品格振興동아리 편저, **國語國字의 品格**(서울: 申昌淳, 2011); 2011.2.24.일자에 대한민국국회가 열린 **한자교육(漢字教育)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2011.6.7.일자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자교육기본법을 위한 공청회** 등.

이해는 물론이고 전문영역 교육, 대학교육,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대학교육 자체에 막대한 어려움이나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점은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가 일상으로 부딪치는 교육현실이기도 하다. 한자의 조어능력도 뛰어난데 그것은 외국어 개념의 번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state 國家, international law 國際法, interdisciplinary 學際間, identity 正體性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오는 동아시아시대를 상정하면, 한자는 명실상부 세계공용어라 할 수 있는 영어에 비견되는, 다수 국가가 쓰는 국제공용문자라 할 수 있어서, 한자를 모르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한자를 쓰는 일본인, 중국인들과의 국제교류에서 한자문맹자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호간의 의사소통능력, 창의력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한다.

한자는 영어·독어·프랑스 등 서양언어에서의 라틴어에 해당하는 역할이나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서양언어의 얼마나 많은 어휘가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서양언어생활에서는 예컨대 우리의 사자성어 썸 되는 라틴어 단어나 구절을 아직도 일상으로 많이 쓰고 있으며, 그것은 법률서나 법률문장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예컨대 동식물의 학명은 죄다 라틴어로 쓰고 있다. 서양언어에서의 라틴어처럼 국어에서의 한자어 사용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술용어·전문용어의 거의 전부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더구나 우리가 쓰는 국어의 어휘 70%이상이 한자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워야 할 과거기록이나 고전은 거의 전부가 한문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한글전용교육은 자기의 전통문화로부터 절연된 고아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교육을 통하여 한자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문으로 된 역사기록물이나 고전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공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강제(필수로)한다고 해서 공교육만 마치면 누구나 다들 영어를 줄줄 잘 읽고 쓰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같음은 물론이다. 공교육과정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과목 등도 교육시키는 이유는 모든 공교육 피교육자를 다 영어박사, 수학박사, 과학자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화·세계화·과학화가 진행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현재 여건 하에서 공교육 후 어느 전문분야, 어느 직업으로 진출하든 그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기본능력(potentiality)과 소양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에는 심지어 대학학부교육도 고교교육과정에서 보다는 심화된 교육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분야에 진출해서도 그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길러 주는 것이

고 전문교육은 대학원과정이나 전문 분야에 진출해서 그 분야 전문가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최근에 이르러 과학자에게도, 잡스와 같은 창의적 작업자에게도, 인문교육이 필수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생활, 지적활동, 전통문화와 떼어 수 없는 한자사용능력의 배양을 통한 인문교육은 접근성이나 친숙성의 점에서 한글세대의 한글과 영어만으로 행하는 인문교육 보다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거나 빠를 수 있다. 한자도 잘하게 하고 영어도 잘하게 하는 교육이면 인문교육에 단연 유리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서양 수학의 그것 못지않아나 한자로 쓰여 있는 우수한 수학서·과학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읽어 낼 수 있는 한자실력이 있는 수학자·과학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자교육은 중국어교육이 아니라 한자가 우리 국어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일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우리의 언어생활, 교육과 문화 활동 및 국제교류에서 차지하는 한자의 유용성·필요성·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교육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해 온 국가에 의한 한글전용정책의 결과 이제는 역으로 한글전용정책을 오히려 정당화할 수 있으리 만큼 많은 세대에 걸친 한자문맹자들을 우리 사회에 배출해 왔다. 바로 그들 한자문맹세대들의 대거 등장 때문에 심각하게도 이제는 새삼스런 한자교육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지경(그리하여 마치 한자어는 국어의 일부가 아니며 그리하여 국가는 한자사용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책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간 국가에 의한 한글전용의 어문정책이 다양한 피해를 우리 사회에 주어왔다. 그렇다면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 방법 등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또한 법적 정의에 합당하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어왔고 앞으로도 줄 것임에 틀림없는 한글전용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그러면 법적 정의실현의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여 이를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같이 법적으로 한글전용정책의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아래에서 다루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동시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의한 한글전용의 강제는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함께 고찰하여야 우리의 접근이 완결적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공문서 한글전용 규정의 뜻은, 한자로 된 어휘가 국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법률언어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그리고

이들 어휘의 한자 표기가 전통적으로 국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전승되어 왔는데, 어느 날 국회가 법원 보고 비록 입법의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판결문 등을 한글로 써라 한자 쓰면 안 된다고 간섭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공문서는 법원의 판결문 등을 포함하느냐,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공공기관 등에는 사법부도 포함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국회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냐의 질문도 다루어 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판결문 작성에서도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한글 전용이 유리할 수 있으나 판결문의 뜻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조항의 경우에서처럼 한자사용이 더욱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라면 판결문에서의 한자 사용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강제 사항이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판결문도 국민의 이해(利害)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하여도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한글전용정책의 위헌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한글전용정책은, 첫째로는 국어기본법 제14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를 한글로만 작성케 함으로써 공문서의 한글전용 강제로 표현되고 있고, 다만 한자를 구지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어와 동일시하여(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 국어기본법시행령이 규정(제11조)한 바에 따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것도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공공기관 등이라고 하여 일견 일반 국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소위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한글전용을 규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이 한글전용의 강제를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규정하였더라도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산하의 사회단체나 조직에 대하여서는 물론 조직 안 된 (공문서 수신자인) 국민 일반에 대하여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과 법적 구속력에 의하여 국민 일반의利害에 미치는 강제효과가 큰 터에 공공기관 “등”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보다는 확실히 넓은 범위의 기관에 대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한글전용의 강제는 실제로는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교육기관의 경우에 비록 사립학교의 경우라도 공공기관 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민일반에 효과를 미치는 국가의 한글전용의 법률에 의한 강제가 법률보다 상위의 규범인 헌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어의 문제는 한 나라의 헌법사항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한글전용정책은 둘째로는 교육과정에서의 한글전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육과정

에서의 한글전용 강제 정책의 문제는 대학입시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는 수학능력평가시험(이하 수능시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수능시험에서 어떠한 교과목이 시험영역에 포함되는지의 문제가 초중고교, 특히 고교 교육의 교과목 내용을 거의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에 한문은 제2외국어와 같은 차원에서 선택과목으로 취급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제1항).⁷⁾ 그리고 초중고교교육과정에 한글전용정책 내지 한자교육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문과목은 영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나 초중고교 교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과목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 이러한 한글전용 내지 한자교육의 틀은 초중고교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이나 인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국어기본법 제18조,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1조). 공교육과정의 아이들은 한글로만 쓰인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에서의 한자교육은 교과부의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교육과정⁸⁾의 일환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시행하는 학교가 있을 뿐인 실정이다.⁹⁾

그러한 만큼 국가의 한글전용정책에 대한 위헌여부 분석·판단의 문제는 결국 한글전용정책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분석·판단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출발점은 위 법률(조항)들이 규율하고 있는 국어의 문제가 헌법사항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거법률들이 규율하고 있는 국어가 헌법사항이 아니고 입법(즉 법률제정)사항이라면 처음부터 위헌이냐의 문제를 따져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는 까닭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어는 헌법사항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국어(즉 나라 말씀)는 우리나라의 공용어이며 우리나라의 공용어를 우리는 국어라고 부른다. 국어가 우리나라의 공용어이며 공용어인 국어를 구지 우리나라의 공용어라고 헌법으로, 심지어는 국어기본법에서도, 정의하지 아니한 이유는 국어가 우리나라의 공용어인 것이 우리 대한국민(we, the Korean)(헌법 전문)에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어의 문제가 헌법사항인 이유는 한 나라의 공용어는 헌법이 다루어야할 문제이

7) 2011년7월4일에 공고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참고.

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1호의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참조.

9) 김승익, “초등학교 한자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위 2011.2.24.일자에 열린 대한민국국회 한자교육(漢字教育)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57-67면 참조.

기 때문이다. 공용어는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국민·주권·영토 가운데 하나인 국민을 정의하는 요소인 것이다. 국어는 우리 대한국민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은 일본어를 쓰는 국민의 나라라고 함과 같다. 그리하여 나라의 공용어가 다수라든지 역사적 이유 기타 문제가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공용어를 그 나라의 헌법에 명시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헌법에 공용어에 관한 헌법조항을 두는 나라가 많다(예컨대 스위스, 프랑스 등). 나라의 공용어뿐만 아니라 수도, 국가, 국기 등을 헌법에 규정하는 나라도 많다. 그것들도 한 결 같이 나라의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어와 같이 자기 나라의 자타가 공인하는 너무나 당연한 공용어인 경우에는 구지 이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헌법사항임에도 이를 구지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경우와 전혀 동일하다.

이같이 나라의 공용어가 그 나라의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서나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제에 비추어 헌법에 명시적인 공용어 규정이 있느냐 어떠냐의 문제와 관계없이 한 나라의 공용어가 헌법사항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가령 한 나라의 공용어를 바꾸려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그 문제를 국민투표나 헌법 개정절차(즉 국민의 가중된 다수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그렇게 하지 단순한 국회과반수 의석의 입법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비록 독재국가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일방적 명령으로 한 나라의 공용어를 쉽게 바꾸는 일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일제는 우리나라 국어를 말살하려 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한 만큼 국어의 문제는 명문규정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사항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국어가 헌법사항에 속하는 문제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것은 불문헌법의 문제¹⁰⁾ 즉 지난 2004년의 수도이전법 위헌결정¹¹⁾에서 헌법재판소가 수도인 서울의 법적 지위를 관습헌법이라고 한 선결결정의 예에 따라 우리나라 관습헌법의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설사 이 선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어를 문화말살정책의 일제하에서 지켜온 우리나라의 공용어라고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국어는 오랫동안 적어도 수 천 년 동안 중단 없이 우리 대한국민이 사용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국어로서 이를 사용하고 지키며 가꿈에 있어 개인적 의견의 차이 없이 명료하게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10)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에 여러 달 앞서 필자가 발표한 최대권, **문화일보** 2004.6.22.일자 〈포럼〉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이다.”; 최대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 **시민과변호사**, 2004년8월호, 15-23면에서 수도이전 특별법이 우리나라 불문헌법 위반임을 이미 논증한 바 있다.

11) 헌법재판소 2004.10.21. 결정 2004헌마554·566.

때문이다. 이처럼 국어의 문제가 (불문 또는 관습)헌법의 문제라면 한글전용의 문제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나아가 (관습)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된다.

다음에 다루어야 할 쟁점은 이처럼 국어가 국어(나라 말씀)인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고유문자인 한글과 함께 국어 어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표기하는 한자도 국어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표음문자인 한글의 세계적인 우수성을 이미 알고 있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언어라도 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음을 자랑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영어 붐에 따라 영어를 쉽게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더구나 외래어표기법도 제정되어 있는 마당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의 자랑인 한글로 영어를 쓰고 배우면 빠르고 쉽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공교육에서 배우는 영어를 표기하기 쉬운 한글로 표기해서 한글로 표기한 영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며 쓰면 진정으로 안 되느냐, 한글로 쓴 영어를 영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유할 때 영어 알파벳으로 쓰고 배우는 영어를 영어라고 하지 한글로 쓰고 배운 영어를 쓰는 경우에 뜻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영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 영어를 배우고 가르친다면 정식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배우고 써야지 한글로 배우고 써서야 제대로 된 영어를 한다고 할 수 없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영어를 모르는 사람을 포함해서 영어를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당장 써야하는 영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외우고 즉석에서 이를 활용하는 편익은 물론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의 또는 즉석에서의 편익을 위한 편법이지 그것이 공교육에서 정식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배우고 쓰는 正道가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배우는 경우에 예컨대 형용사 포서불과 명사 포시빌리티를 필경 별개의 단어로 배워야 하리라. 그리고 그 경우에 possible과 possibility가 동일어간의 어미변화에 따른 형용사형과 명사형임을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국어의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 행하는 한자어 학습이나 사용은 이러한 영어의 예에서 본 바와 전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국어, 국가, 국가(國歌), 국방, 국사, 국산, 국경일 등 모두 나라 國에 관련 시켜 만들어진 중요한 단어들을 한자 國을 가르치고 배움이 없이 각기 별개의 단어로서 배우고 써야 한다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태도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어에 나오는 한자어 어휘들은 국어의 불가분(integral)의 일부이며 그러한 한자어 어휘를 한자로 표기하는 표기방식도 국어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국어를 더 잘 활용하고 언어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한자사용·한자교육이 필

요하다. 한글전용법은 한글로 표기해 쓰는 영어를 쓰고 그러한 영어를 초중고교 등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회화나 공문서에서 쓰라는 것과 전혀 동일하다.

그러한 만큼 국어의 불가분의 일부인 국어의 한자어 어휘들을 한자로 표기하여 쓰고 배우는 일은 극히 자연스럽고 사물의 순리에도 맞는다. 그것은 영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해 쓰고 배우는 것과 전혀 동일하다. 이러한 자연적 순리에 비추어 보면 한자를 배워야 어휘력이 는다, 창의력이 는다, 국제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다 등으로 지적된 한자사용·한자교육의 유익성·필요성은 오히려 부수적이라 할만하다. 순리에 어긋나는 입법은 한글전용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자의(恣意)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한글전용의 이데올로기에는 한글전용이야말로 애국심이나 한국민족주의에 적합하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도 있을 것이고 북한이 일찍이 한글전용의 정책을 채택한 만큼 우리도 그래야 맞는다는 생각 등에 기초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된다. 풍부한 창의적 국어사용을 위한 한자사용·한자교육이 한국민족주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한글전용의 주장은 영어 쓰는 사람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함과 같다. 또 이곳에서 주장하는 한자사용·한자교육이 중국어를 배우고 쓰자는 것도, 한자어로 된 우리의 고전들을 자유자재로 읽고 쓰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한 수준이 되려면 전문적인 한문교육이 필요함은 말 할 것도 없다. 이곳에서의 주장은 오직 국어의 불가분의 일부인 한자어를 자유자재로 읽고 쓰자는 한 국어사용·교육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만큼 한글전용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자어를 배우고 사용하여 오랫동안 영위해 온 우리의 국어생활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는 국가가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9조). 더구나 관습·관습법이야말로 전통문화의 일부가 아닌가? 전통문화란 전승되어온(연속성), 언어생활을 포함해서 사고(思考)나 행위의 양태, 의식(儀式), 음악, 미술, 건축양식 등 역사적·예술적 가치(價値)가 높은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오래 전승되어온 관행이라고 다 전통문화라고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로 뇌물수수의 관례를 들 수 있다. 뇌물수수의 관례는 타파해야 할 사회적 폐습(헌법 전문)에 지나지 않는다. 동성동본금혼법의 위헌결정은 이를테면 오늘날에 이르러 사회적 폐습으로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래된 관행이나 관습이나 관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전통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들을 전통문화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²⁾ 그러한 만큼 국어의 한자어어휘, 한자어어휘를 표현하기 위한 한자어사

용의 오랜 관습(법)이 전통문화에 속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국어기본법을 위시해서 최근에 정치적 쟁점의 표적이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수도이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위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률명들을 보면 한자를 사용치 않은 법률명을 찾기 어렵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나 관공서명, 지역명, 사람의 성명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우리만큼 널리 한자를 사용하여 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 한자사용은 언어생활에 관련된 관습이자 전통문화의 자연스런 표출형태임을 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전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

한자 자체가 원래 중국에서 전래된 문자라고 하는 사실은 국어의 한자 어휘의 한자표기 방식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미국에서 쓰는 영어가 원래 미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영어사용이 미국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과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속하는 유교나 불교문화는 원래 인도·중국에서 유래하였지만 전래 후 오랜 세월동안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녹아들어 이제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되어 있다. 어느 사항의 전통문화 여부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원래 어디에서 유래했느냐가 아니라 오랫동안의 사용을 통하여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오래된 문화의 일부가 되었느냐의 점이라고 생각한다. 국어 한자 어휘의 한자표기방식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국어 한자 어휘의 표기에 한글의 전용을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글전용법은 국가가 자기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책무를 저버린 입법행위(국가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입법행위 및 그 시행은 탄핵소추를 비롯한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 국회 등 국가기관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한자사용·한자교육을 주장하는 국민이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책무의 성실한 이행으로부터 국민이 얻는 권익(행복추구권, 교육권, 자기계발권 등의 보호)을 한글전용법의 형태로 행하는 제약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부득이한 공공복리(공익)를 국가가 거증하지 못하는 한 한글전용법은 위헌법률이 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바로 헌법 제9조의 존재로 인하여 한글전용법이 가져다주는 편익(필요성)은 우선 국가기관의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한 헌법 위배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누리는 편익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글전용법이

12) 崔大權, “헌법의 連續性과 變化에 관한 談論-傳統과 社會的 弊習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44권 1호, 86-106면(2003); 崔大權, “文化財保護와 憲法,” 서울대학교 法學, 6-11면(2003) 참조.

가져다주는 편익(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헌법 제37조제2항 상으로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책무이행으로 얻는 (위에서 누누이 열거한) 국민의 기본권의 제약(과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헌법상 책무 위반)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리만큼 꼭 필요하고 부득이한 제약(편익)이라고 판단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어 한자 어휘의 한글전용 강제는 헌법 제9조 및 제37조제2항에 위배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시킬 권리 및 학생의 학습권·자기 계발권(헌법 제31조)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학생은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려는 학습권·자기계발권(啓發權)(헌법 제31조)을 가지는데 교육과정에서 한글전용의 교육은 지적으로나 인성의 면에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한자어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한글전용의 강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교육권·교육시킬 권리·학습권 내지 자기 계발권에 대한 국가의 위헌적인 침해조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를 그 사유로 하여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8조,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등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지막 셋째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의 한글전용 강제를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가 사법부도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장의 순리에 따라 문리해석(文理解釋)으로 접근할 때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공공기관 등에는 사법기관이 포함된다고 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국어기본법 제14조는 사법부의 판결문도 한글전용으로 작성하라는 조항이 된다. 이러한 해석에 바탕을 둘 때 국어기본법 제14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한글로 쓸 것이냐 전통적인 방식대로 혹은 법률문장의 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어인 경우에 한자로 쓸 것이냐의 판단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인 국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사법부가 작성하는 판결문의 한글전용 강제는 입법부의 입권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憲法合致的 解釋)의 원칙에 따라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에 사법부의 판결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어기본법에 대한 한정적 해석(限定的 解釋)이 가능하다면 그 한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4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한정적 해석이 합리성의 결어로 어렵다면 국어기본법 제14조는

사법부의 판결문도 그 적용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법률조항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공식적인 태도 표명을 얻기 위해 이들 기관에 헌법소원과 같은 문제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정문 등을 포함하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문건들의 한글전용에 의한 의미전달의 불명확·혼동 등으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불편, 혼란, 불이익들 때문의 국민의 공정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1항·제3항),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은 국어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표기에서의 한글전용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한글전용 정책은 여러 입법을 통하여 강제 실현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한글표기 강제 규정과 국어표기 시 한자의 외국와의 동일시 규정, 그리고 이러한 입법의 기조가 공교육과정에도 표출되어 있는 대학 수능시험에서의 한문의 선택과목화 법조항(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항, 그 시행령 제35조제1항), 한글전용의 초중고교 교과서 법조항(국어기본법 제1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등), 한문을 초중고교 교과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만든 법조항(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그 시행령 제43조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들에 의한 국어표기에서의 한글전용정책의 강제는 첫째는 불문 또는 관습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정책의 강제가 된다고 판단된다. 국어는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불가분의 한 부분이며 또 국어 한자 어휘의 한자에 의한 표기가 국어의 불가분의 일부인 까닭이다. 국어 한자 어휘의 한글전용의 표기는 영어 표기에서의 한글전용 강제에 비견될 수 있다. 영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사용하고 배우면 훨씬 쉬울 수 있으나 그러한 영어를 영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어의 한자어의 한글표기 강제는 대단히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국어의 한자어의 한자 사용은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전통문화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국어 한자어의 한자 사용의 관습은 그 자체가 전통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통문화는 국가가 계승·발전의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9조). 그러한 만큼 국가의 한글전용정책의 법적 강제는 국가가 범하는, 국어 한자어의 한자사용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헌법위반행위를 한글 사용의 편익 이상으

로 특히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거증하지 아니하는 한 국어 한자어의 한글전용 강제는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롯한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기에 충분한 헌법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국어의 한자어 사용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국가의 책무 이행으로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권익(국민의 행복추구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자기 계발권 등)의 제약을 그 책무의 헌법위반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권익 침해를 당한 국민은 위의 국어표기에서의 한글전용법조항의 위헌여부를 헌법소원 등으로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한글전용의 강제가, 사법부의 판결문 작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헌법합치적·한정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부의 판결문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어기본법 제14조가 이렇게 해석되는 한 이 조항은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해하는 조항(그리하여 입법부의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법부는 이 조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국어기본법 제14조는 사법권 독립의 차원에서도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사법부는 현재 한글전용이 주는 편익에 편승하여 스스로 한글만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한자어인 법률용어를 한자로 표기할 것이냐 계속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할 것이냐는 사법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법률에 의한 국어의 한글전용 정책이 입법적으로(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으로)나 사법적으로(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위헌·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 국어 한글전용으로 할 것이냐 한글·한자 병용으로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를 전적으로 문자사용자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가는 국어 한자어의 경우에 한자를 쓰는 한글·한자 병용 장려의 입법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언어생활의 순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憲法 제9조에 비추어 본 國語基本法の 문제점

李仁皓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학)

목 차

- I. 序言 : 문제의 제기
- II. 憲法 제9조의 意義와 規範的 效力
 - 1. 憲法 제9조의 意義와 法的 性格
 - 2. 憲法 제9조의 規範的 效力
- III. 「국어기본법」의 문제점과 憲法不合致性
 - 1. 「국어기본법」상의 國語 개념의 不完全性
 - 2. 한글專用政策의 폐해의 심각성
 - 3. 「국어기본법」의 憲法不合致性
- IV. 맺는 말

I. 序言 : 문제의 제기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시행일 2005. 7. 28)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밑줄 필자).

이러한 입법목적과 이념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강조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헌법인 「大韓民國憲法」은 그 前文에서 우리 국민을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第1章(總綱) 第9條는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第69條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할 것임을 선서하도록 명

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¹³⁾ 이 땅에서 수 천 년 이어져 온 조상들의 총체적 삶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인 우리말 國語가 우리 전통문화의 요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우리말 國語”의 개념을 매우 좁게 한정지우고 있다. 즉, “우리말 國語”의 개념을 ‘한글이라는 우리의 고유문자로 표기되는 언어’로 좁게 설정함으로써 본래의 입법목적은 달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와背馳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말 國語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글로만 한정지우고 漢字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같은 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는 漢字를 외국 글자로 취급하고 있다. 즉,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어기본법」의 기본전제는 종래 채택되어 온 한글專用政策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처럼 우리말 國語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글에 한정지우고 漢字를 배제하는 입법적 전제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憲法의 정신에 과연 合致하는 것인가를 論究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우리의 조상들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漢字(=이것을 어떤 이는 韓字 혹은 國字라고 명명함)는 우리말 國語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漢字語를 한글로 표기한 것만이 우리말 國語에 해당하고, 漢字(=韓字 혹은 國字)로 표기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말 國語가 아니게 되는가?

흥미롭게도, 1948년에 제정되고 1987년에 개정된 현행의 大韓民國憲法은 그 前文과 본문 130개 條, 그리고 附則 6개 條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 國漢混用體로 표현되어 있다. 심지어 거의 모든 개념어는 漢字로 표기되어 있다. 그 예시로 前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 표시).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

13) 第4章(政府) 第1節(大統領)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公告히 하고, 모든 社會의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 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이처럼 大韓民國憲法이 國漢混用體를 건국 이후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憲法의 언어가 우리말 國語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05년에 제정된 「국어 기본법」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II. 憲法 제9조의 意義와 規範的 效力

1. 憲法 제9조의 意義와 法的 性格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文化國家의 原理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고 여러 결정에서 判示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前文에서 “문화의 …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제9조), 또한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란 개별성·고유성·다양성을 그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들 기본권은 그러한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⁴⁾

14)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과외금지 사건) [6(위헌) : 1(헌법불합치) : 1(헌법불합치) : 1(합헌)]; 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9(위헌·적용 중지명령 헌법불합치) : 이 참조. 헌법재판소는 소위 ‘과외금지 사건’(98헌가16등)에서 “국가가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 밖에서] 교과목, 비교과목, 예술, 기술 등을 망라하는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학원과 교습소를 통해서만 사교육을 받도록 규율함으로써 결국 누구나 거의 같은 수준과 내용의 사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창의와 개성, 최고도의 능력발휘를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국민 개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 … [이러한] 형태의 사교육에 대한 규율은 … 공동체를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만들며, 국가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에서 문화의 빈곤은 곧 사회적·경제적인 후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이러한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으로 ①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② 문화의 보호·육성·진흥·傳授 ③ 문화적 평등권의 보장을 들고 있다.¹⁵⁾ 여기서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이란 국가의 문화정책이 문화활동에 대하여 중립성과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 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 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¹⁶⁾

요컨대, 헌법 제9조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¹⁷⁾ 중의 하나인 문화국가의 원리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조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은 제9조에서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문화국가적 과제를 부과하면서, 나아가 제69조에서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선언함으로써 문화국가적 과제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국가적 과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9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목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⁸⁾ 국가목표규정이라 함은 國家가 指向하여야 하는 指針이나 方向을 提示해주거나 국가기관에게 命令과 指示를 통하여 실질적 課題나 任務를 附與하는 헌법규정을 의미한다. 국가목표규정은 기본권규정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에게 특정한 기본권을 부여해주지는 않지만, 입법·행정·사법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과제수행

15)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 175-177면;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126-128면(① 문화조성의 과제 ②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③ 문화적 약자의 보호); 장영수, 홍문사, 2007, 232-234면(① 자율적 문화활동의 보장 ② 문화적 평등의 확보 ③ 문화의 보호와 진흥);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343-344면 등 참조.

16) 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9(위헌·적용중지명령 헌법불합치) : 0].

17) 통상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그리고 평화국가 원리를 든다.

18) 전광석, “헌법과 문화” 공법연구 제18집, 한국공법학회, 1990, 177면;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공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4; 한수웅, 앞의 책, 342면.

의 의무와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는 구속력 있는 헌법규정이다.¹⁹⁾ 그리하여 국가기관이 국가 목적규정에서 지시된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시된 지침이나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재판기관에 의한 헌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과제의 실현이 전적으로 입법부에게 맡겨져 있는, 그리하여 헌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성격의 규범이 아닌 것이다.

2. 憲法 제9조의 規範的 效力

물론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傳統文化’라고 할 때 거기에는 모든 전통적인 가치나 제도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9조에서 보호되는 傳統文化란 헌법의 정신과 객관적인 가치결정에 부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설령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제10조)²⁰⁾ 및 혼인과 가족에 관한 헌법의 기본결정(헌법 제36조)²¹⁾에 반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폐습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금혼제와 호주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²²⁾

그러나 한편으로 헌법의 가치결정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는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의 의무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의 전통사찰 소유권변동 사건’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러한 헌법 제9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양

19) 정극원, 국가목적규정에 관한 일고찰,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3. 4; 전광석, 위의 논문, 177면; 김수갑, 위의 논문, 192면 참조.

20) 大韓民國憲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의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21) 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の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保障한다.

22) 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호주제 사건) [6(헌법불합치) : 1(일부위헌) : 1(합헌) : 1(합헌)] :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9)고 하여 전통의 이러한 역사성과 시대성을 확인한바 있다. … 따라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명한 한계가 도출된다.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과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전문, 제9조, 제36조 제1항을 아우르는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도허가조항을 7 : 2로 위헌적 법률이라고 판단하였다.²³⁾ 즉, 헌법재판소는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과제를 불충분하게 입법화한 양도허가조항에 대해 憲法不合致결정을 내린 것이다.²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헌법 제9조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게 ‘민족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불충분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통해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規範力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전통문화유산인 우리말 國語의 계승·발전 과제를 매우 불충분하게 입법화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가로막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국어기본법」을 헌법적으로 단죄하는 데 그 準據가 될 수 있는 결정이다.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이 결정의 내용을 살피기로 한다.

‘2003년의 전통사찰 소유권변동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양도허가조항이다. 양도허가조항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이 소유권변동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私的 所有인 전통사찰의 경내지와 부속 건물을 主持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양도는 무효로 하고 있었다.²⁵⁾ 그런데 문제의 전통사찰인 선암사²⁶⁾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 당시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收用裁決이 내려졌다. 이처럼 지정된 전통사찰이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로 수용되게 되자 그 수용처분을 다투어 行政訴訟를 提起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위 양도허가조항에 따른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수용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

23)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전통사찰 소유권변동 사건) [7(헌법불합치) : 2(합헌)].

24)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법률조항의 효력을 당장에 소멸시키는 소위 ‘單純違憲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어떤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효력을 당장에 소멸시키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憲法不合致 결정’을 내리게 된다. ‘憲法不合致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자는 그 위헌의 취지에 따라 문제된 법률조항을 개선해야 할 입법적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까지 입법개선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시한 직후로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5)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허가사항) ① 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26) 부산에 있는 선암사이다. 이 사찰은 서기 675년(신라 문무왕 15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당시 문화공보부장관의 지정에 따라서 1988. 7. 19.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었다.

법원은 공용수용으로 인한 전통사찰 경내지와 부속 건물의 소유권 변동은 위 양도허가조항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선암사는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양도허가조항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양도허가조항에 대하여 7(헌법불합치) : 2(합헌)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7인 다수의견의 위헌이유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사찰보존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 법률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우리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헌법 제9조의 규정趣旨와 민족문화유산의 本質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價値補償)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양도허가조항)은 ‘전통사찰의 住持가 그 境內地 등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국가의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경내지 등의 양도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법률의 입법목적과 토지에 정착된 전통사찰과 같은 민족문화유산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통사찰의 경내지 등에 대한 모든 소유권변동은 그 변동원인의 종류나 유형에 관계없이 전통사찰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헌법적 보호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인 ‘공용수용’으로 인한 전통사찰 경내지의 소유권변동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③ 전통사찰의 경내지 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소유권변동이 전통사찰을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양도허가조항)은 다른 소유권변동원인과 달리 ‘公用收用’으로 인한 所有權變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민족문화유산의 존속’이라는 헌법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공용수용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통사찰 소유자의 의사 등과 관계없이 그 보존을 훼손하고자 하는 주체가 건설부장관과 같은 제3자적 국가기관이고 그 형식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수용절차라는 점은 지극히 偶然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에 있어서는 관할 국가기관 등이 전통사찰을 실효성 있게 보존할 수 있

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바, 이는 공용수용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변동의 경우와 공용수용에 의한 소유권변동의 경우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 제23조를 이유로 하여 헌법 제9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④ 우리 헌법 제9조의 규정내용과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전통사찰을 훼손하고자 시도하는 주체가 제3자적 국가기관이고, 그 형식이 공용수용이라는 점은 지극히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양도허가조항)은 그 경내지 등의 소유권변동에 관하여 이러한 우연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가가 이미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전통사찰을 훼손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관할 국가기관이 실효성 있게 판단·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사안과 그렇지 아니한 사안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별을 행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결국, 전통사찰 경내지 등에 관한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제3자적 국가기관에 의한 공용수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용인하는 관할 국가기관의 의사표시를 소유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는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의 의무”라고 하면서, 이러한 헌법 제9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양도허가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Ⅲ. 「국어기본법」의 문제점과 憲法不合致性

1. 「국어기본법」상의 國語 개념의 不完全性

이 땅에서 수 천 년 이어져 온 조상들의 총체적 삶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인 우리말 國語가 헌법 제9조 소정의 “傳統文化”와 “民族文化”의 요체로서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우리말 國語”의 개념을 매우 좁게 한정지우고 있다. 즉, “우리말 國語”의 개념을 ‘한글이라는 우리의 고유문자로 표기되는 언어’로 좁게 설정함으로써 전통문

화의 계승·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와 背馳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말 國語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글로만 한정지우고 漢字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같은 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는 漢字를 외국 글자로 취급하고 있다. 즉,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어기본법」의 기본전제는 종래 채택되어 온 한글專政策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러나 역사적으로 漢字가 삼국시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래 2천여 년 동안 이 땅의 선조들은 漢字를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왔고 또 漢字를 이용하여 모든 삶의 지식과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왔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訓民正音を 창제한 이래 우리의 언어생활은 漢字와 한글이라는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이루어져 왔다.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漢字와 한글은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것”이다.²⁸⁾ 漢字는 한글과 더불어 엄연히 國字이며, 세종대왕은 漢字를 쓰는 것을 전제로 「正音」(글자의 바른 음)을 창제한 것이라고 한다.²⁹⁾ 현재 우리말 國語의 어휘 중 약 70%가 漢字語이며, 거의 모든 專門語(概念語)는 漢字語이다. 漢字는 이미 우리 어휘와 언어생활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³⁰⁾

27) 「국어기본법」이 종래 한글전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漢字를 國語의 개념에서 배제시켰다는 비판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李明學(성균관대 교수), “漢字教育의 當爲性과 意義”, 「한자교육(漢字教育)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이강래·김광림 의원 주최, 2011. 2. 24), 11면; 陳泰夏(인제대 석좌교수), “잘못된 「국어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함”, 「한자교육(漢字教育)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이강래·김광림 의원 주최, 2011. 2. 24), 29면 참조.

28) 전통문화연구회, 漢字教育 立國, 한자한문교육총서 21, 2003, 간행사(傳統文化硏究會 회장 李啓冕)에서 인용.

29) 陳泰夏 석좌교수는 세종대왕이 「正音」을 창제하여 먼저 실험적으로 저작한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을 보면 國漢混用으로 되어 있지 결코 한글專用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세종대왕이 漢字를 쓰는 것을 전제로 「正音」을 창제한 것이라고 한다. 陳泰夏, “잘못된 「국어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함”, 「한자교육(漢字教育)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이강래·김광림 의원 주최, 2011. 2. 24), 30면 참조.

30) 우리말을 살펴보면 우리의 固有 漢字語(洞口, 溫突, 碧昌午, 南男北女), 중국에서 들어온 漢字語(君子, 小人, 銀行, 狐假虎威), 일본에서 들어온 漢字語(社會, 國民, 哲學, 論理, 自然)가 있고, 심지어 영어와 결합된 것(gang牌, can桶, 狂cl, com盲, 惡pl, 狂fan, 急tempo, 螢光pen) 등 선진 문화의 유입으로 새로운 용어와 어휘가 만들어졌으며, 한글과 결합된 것(소固執, 眼鏡테, 醋밥, 革띠, 越담), 일본어와 결합된 것(滿땅, 宣傳빠라) 등이 있다. 李明學(성균관대 교수), “漢字教育의 當爲性과 意義”, 「한자교육(漢字教育)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이강래·김광림 의원 주최, 2011. 2. 24), 5면에서 재인용함.

그럼에도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우리말 國語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글에 한정 지우고 漢字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漢字(=이것을 어떤 이는 韓字 혹은 國字라고 명명함)는 우리말 國語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漢字語를 한글로 표기한 것만이 우리말 國語에 해당하고, 漢字(=韓字 혹은 國字)로 표기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말 國語가 아니게 되는가?

요컨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우리말 國語를 구성하는 두 개의 문자 중 한글만을 개념요소로 채택함으로써 헌법 제9조가 명령하는 입법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글專用政策의 폐해의 심각성

한글專用政策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³¹⁾이 1948년 10월 9일 제정·공포된 이래로, 그리고 1970년 3월 1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초·중·고에 한글전용이 전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급기야 2005년의 「국어기본법」에서 상당한 정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말 國語의 개념에서 漢字를 배제시킨 것이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는 제1항에서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50여 년 이상 지속된 이러한 한글專用政策이 우리의 국어생활에 가져다주는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漢字를 잘 알지 못해 20년 전에 國漢混用으로 쓰인 책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 대학도서관에 있는 그 수많은 장서들이 모두 쓸모없는 책으로 死藏되어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20년 전의 지식과 지혜조차도 젊은이들에게 전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31)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1개 조문으로 되어 있었다. 즉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광복 이전에 日帝의 우리말 말살정책에 맞서 투쟁하였던 朝鮮語學會(1949. 3. 24, ‘한글학회’로 개칭)가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한글전용론자들은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운동을 벌였고, 국한혼용론자들은 법률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한편 일부 국한혼용론자들은 단서 조항의 ‘병용’을 ‘혼용’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즉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 한글과 나란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한글과 한자를 아울러 같이 쓰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내용은 박용찬, “국어기본법의 법률적 실효성과 의의”, 한말연구 제23호, 2008, 123면 각주 3에서 인용함.

한글전용정책의 弊害에 대해서는 실로 많은 論者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언어 문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기능의 붕괴, 즉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의 왜곡·왜전·혼란이 우려됨을 수많은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이는 國語의 붕괴, 전통문화의 단절, 언어생활의 재앙, 문명의 묘지를 파는 결과라고까지 말하고 있다.³²⁾

3. 「국어기본법」의 憲法不適合性

「국어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말 國語”의 개념을 ‘한글이라는 우리의 고유문자로 표기되는 언어’로 좁게 설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와 背馳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漢字(=韓字 혹은 國字)는 명백한 우리말 國語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漢字語를 한글로 표기한 것만이 우리말 國語에 해당하고, 漢字(=韓字 혹은 國字)로 표기하게 되면 우리말 國語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반한다.

헌법 제9조에서 명령하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는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의 의무이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의 전통사찰 소유권변동 사건’에서 헌법 제9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양도허가조항을 7 : 2로 위헌적 법률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를 때, 전통문화유산인 우리말 國語의 계승·발전 과제를 매우 불완전하게 입법화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가로막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국어기본법」은 헌법 제9조의 정신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1948년에 제정되고 1987년에 개정된 현행의 大韓民國憲法은 그 前文과 본문 130개 條, 그리고 附則 6개 條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 國漢混用體로 표현되어 있으며, 심지어 거의 모든 개념어는 漢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憲法이 國漢混用體를 건국 이후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憲法의 언어가 우리말 國語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은 憲法과 양립되기 어려운 법률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법론과 관련하여, “국가가 어

32) 자세한 내용은 2011. 6. 7. 김성곤/김세연/조순형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漢字教育基本法을 위한 公聽會」 자료집에 수록된 민현식 교수(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의 발제문(“국어 정책과 한자 문제의 해결방안”)과 네 분의 토론문(박원홍, 이준석, 이규향, 이기호) 참조. 또한 2011. 2. 24. 이강래/김광립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자교육(漢字教育)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에 수록된 이명학 교수(성균관대)의 발제문(“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과 다섯 분의 토론문(진태하, 황영식, 이준석, 김승익, 김선철) 참조.

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며,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³³⁾고 설시한 바 있다. 「국어기본법」이 어문정책에 있어서 한글만을 편향적으로 선호하고 우대하여 우리말 國語의 기본바탕을 이루고 있는 漢字를 홀대하는 것은 문화국가 원리를 실현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³⁴⁾

IV. 맺는 말

이 글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과 편리성 등 그 우수성을 貶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글의 우수성이 그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漢字와 더불어 우리의 언어생활이 풍요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어기본법」이 漢字를 우리말 國語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한, 헌법 제9조의 傳統文化의 계승·발전 및 民族文化의 暢達의 국가적 과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 끝 -

33) 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9(위헌·적용중지명령 헌법불합치) : 0].

34) 헌법 제9조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이한동 외 5인, 「국어 개념의 정립과 국어교육에서의 한자 문제」(전통문화연구회/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한자교육국민운동 연구자료집, 2011. 6), 24-37면 참조.



사단
법인 **전통문화연구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411호
전화 : 02) 762-8401 전송 : 02) 747-0083
전자우편 : juntong@juntong.or.kr
홈페이지 : juntong.or.kr
사이버서당 · 한문연수원 : cyberseodang.or.kr